

강원도교육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 구성원 인권 실태 조사

2014. 7. 9.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 구성원 인권 실태 조사

2014. 7. 9.

강원도 교육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 구성원 인권 실태 조사

2014. 07. 09.



강원도교육청

제 출 문

강원도교육감 귀하

이 보고서를 2014년도 연구 용역 사업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 구성원 인권 실태 조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07. 09.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완

《 참여 연구진 》

- 연구책임자 김 형 완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공동연구자 박 근 덕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평화인권센터 부센터장)
- 이 경 희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 밝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 은 희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 임 소 진 (가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연구보조원 이 인 섭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
- 심층 면접위원 김 슬 기, 정 혜 경 (변호사)
박 세 정, 김 나 현 (변호사)
김 래 영 (인권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김 동 창, 최 석 군, 최 은 정 (강원대학교 로스쿨)
-
- 자문위원 김영국(춘천 고등학교) 김종만(유촌 초등학교)
김혜숙(안흥 중학교) 박은주(서상 초등학교)
송원섭(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 정구익(남춘천 중학교)
김수정(태백교육지원청) 이상녀(강원도교육연구원)

이 연구는 강원도교육청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
이나 의견 등은 강원도교육청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제 1 장 개요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2
3. 연구 방법	24
4. 연구의 기대효과	25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7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기초분석	3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31
제2절 학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37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37
2.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	39
3. 폭력(체벌 포함)	45
4. 학교생활 만족도(PISA)	49
5. 가족시간 및 가족형태	51
6. 소결	52
제3절 보호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54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54
2.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	56
3. 자녀의 생활 만족도	58
4. 보호자 참여	61
5. 소결	62

제4절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64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64
2. 학생의 기본권 권리 보장	66
3. 교사의 학교생활	72
4. 교육활동에의 어려움	76
5. 교권의 의미 및 학생 지도 방법	80
6. 학생인권사례에 대한 교사 생각	81
7. MBI 직무피로도	85
8. 소결	87
제5절 학교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89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89
2.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	91
3. 학교 폭력 등	95
4. 교육환경	96
5. 소결	99
제 3 장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103
제1절 집단면접조사 개요	103
제2절 학생 집단면접조사결과 기초분석	104
제3절 보호자 집단면접조사결과 기초분석	116
제4절 교사 집단면접조사결과 기초분석	129
제 4 장 심화 분석	141
제1절 학교생활만족도(PISA)	141
제2절 차별	145
제3절 학교폭력 등	149
제4절 자유권 및 학생자치 등	155
제5절 교사의 직무피로도(MBI) 분석	160

제6절 기타	162
제7절 소결	165
제 5 장 시사점 및 제안	169
1. 강원도 내 학교 인권문화의 기초 확인 및 질적 성장 가능성	169
2.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의 실현 중요성 확인	169
3. 강원학교공동체의 핵심 고리 - 차별	170
4. 인권의 주체로서 교사의 성장 지원 필요	171
5. 강원 교육공동체 인권역량 강화	172
6. 강원도 내 인권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인권역량 강화 제안	173
부록 I (온라인 설문지)	175
1. 학생용	177
2. 보호자용	183
3. 행정부문	187
4. 교사용	189
5. 학교장용	197

표 목 차

<표 I-1>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비율	20
<표 I-2> 청소년(15~19세)의 자살에 대한 충동 이유(2010년)	20
<표 II-1> 설문 참여자 현황	31
<표 II-2> 학교 설립 형태	32
<표 II-3> 학교 규모별(학년당 학생수)	32
<표 II-4> 학생 가정 유형	32
<표 II-5> 교사 성별 비율	32
<표 II-6> 교사 지역별 비율	33
<표 II-7> 교사 연령별 비율	33
<표 II-8> 교사 근무년수별 비율	33
<표 II-9> 학교장 성별 비율	33
<표 II-10> 학교장 연령별 비율	34
<표 II-11> 학교장의 교사 근무연수 분포	34
<표 II-12> 보호자 지역별 현황	34
<표 II-13> 설문 참여 보호자의 관계	34
<표 II-14> 설문참여 보호자의 가정 유형별 분류	35
<표 II-15> 학급당 학생수	35
<표 II-16> 학교규모(학생수)별 학교수	35
<표 II-17> 성비별 학교 분포	36
<표 II-18> 초등학교 교사/ 학생분포	36
<표 II-19> 중학교 교사/ 학생분포	36
<표 II-20> 인문계고 교사/ 학생분포	36
<표 II-21> 특성화고 교사/ 학생분포	36
<표 II-22>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학생)	37
<표 II-23> 학생인권조례 인지 여부(학생)	37
<표 II-24>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생)	38

<표 II-25> 헌법 및 교육기본법 내 인권보장조항 인지 여부(학생)	38
<표 II-26> 성적에 따른 차별 존재 여부(학생)	39
<표 II-27>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학생)	39
<표 II-28>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학생)	40
<표 II-29>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여부(학생)	40
<표 II-30> 학교 성적 공개여부(학생)	41
<표 II-31> 각서 및 반성문 강요여부(학생)	41
<표 II-32> 정기 학급회의 및 학생회 여부(학생)	42
<표 II-33> 학생 의견 반영 여부(학생)	43
<표 II-34> 고민 상담 대상(학생)	43
<표 II-35> 교사 처벌 유형(학생)	44
<표 II-36> 자율적 동아리 활동여부(학생)	44
<표 II-37> 평균 수면 시간(학생)	45
<표 II-38>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여부(학생)	45
<표 II-39> 언어폭력 피해 경험여부(학생)	46
<표 II-40>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여부(학생)	46
<표 II-41> 교사 체벌 경험여부(학생)	47
<표 II-42> 교사 언어폭력 경험여부(학생)	47
<표 II-43> 가정 내 체벌 경험여부(학생)	48
<표 II-44> 가정 내 언어폭력 경험여부(학생)	48
<표 II-45> 자아 존중감 여부(학생)	49
<표 II-46> 교사의 학생의견 경청 정도(학생)	49
<표 II-47> 교사의 학생행복 관심 정도(학생)	50
<표 II-48> 즐거운 학교생활(학생)	50
<표 II-49> 학교생활 영향 평가(학생)	51
<표 II-50> 가족과의 평균 여가시간(학생)	51
<표 II-51> 가정유형(학생)	52
<표 II-52>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보호자)	54
<표 II-53> 학생인권조례 인지여부(보호자)	54
<표 II-54> 학생인권조례 영향평가(보호자)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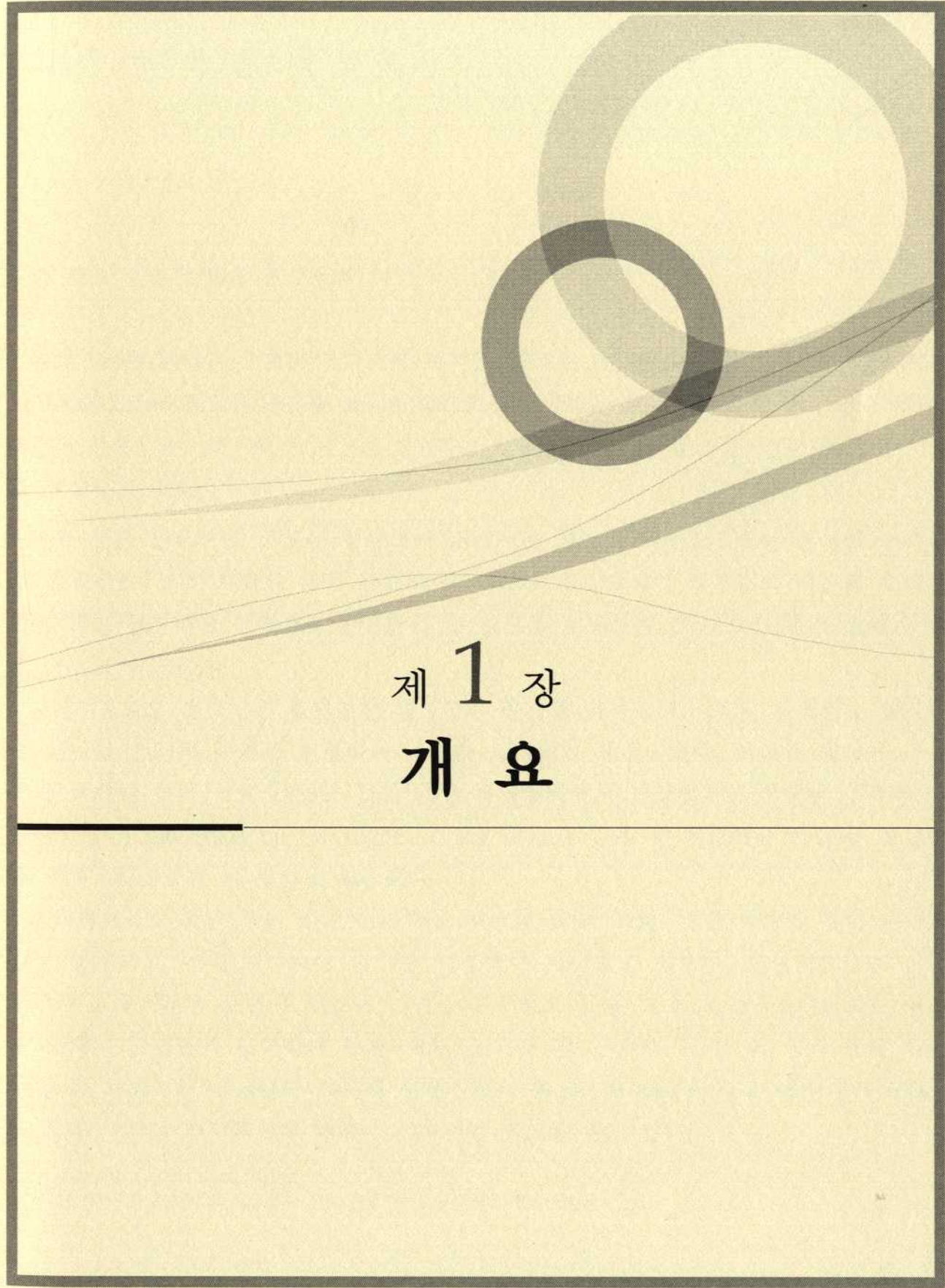
<표 II-55> 헌법 및 교육기본법 내 인권보장조항 인지여부(보호자)	55
<표 II-56> 성적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보호자)	56
<표 II-57>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보호자)	56
<표 II-58> 학습 선택권 보장여부(보호자)	57
<표 II-59>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여부(보호자)	57
<표 II-60> 각서 및 반성문 작성강요여부(보호자)	58
<표 II-61> 등교에 대한 자녀의 태도(보호자)	58
<표 II-62> 학교생활 장애요인(보호자)	59
<표 II-63> 학교생활 중요요인(보호자)	59
<표 II-64> 학교폭력 피해 경험여부(보호자)	60
<표 II-65>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여부(보호자)	60
<표 II-66> 교사 체벌 경험여부(보호자)	61
<표 II-67> 학교 정책 결정 시 보호자 의견 반영여부	61
<표 II-68> 학교 운영 내 보호자 참여정도	62
<표 II-69>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교사)	64
<표 II-70> 학생인권조례 인지여부(교사)	64
<표 II-71> 학생인권조례 영향평가(교사)	65
<표 II-72> 헌법 및 교육기본법 내 인권보장조항 인지여부(교사)	65
<표 II-73> 성적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교사)	66
<표 II-74>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교사)	66
<표 II-75> 학습 선택권 보장여부(교사)	67
<표 II-76>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여부(교사)	67
<표 II-77> 각서 및 반성문 작성강요여부(교사)	68
<표 II-78> 정기 학급회의 및 학생회여부(교사)	68
<표 II-79> 학생 의견 반영여부(교사)	69
<표 II-80> 고민 상담 대상(교사)	69
<표 II-81> 자율적 동아리 활동여부(교사)	70
<표 II-82> 학교폭력 피해 경험여부(교사)	70
<표 II-83>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여부(교사)	71
<표 II-84> 교사 체벌 경험여부(교사)	71

<표 II-85> 교사의 학생의견 경청 정도(교사)	72
<표 II-86> 교사의 학생행복 관심 정도(교사)	72
<표 II-87> 교사 의견 반영 필요도(교사)	73
<표 II-88> 교사 의견 반영 정도(교사)	73
<표 II-89> 학생인권주체로서의 교사 인정 필요도(교사)	74
<표 II-90> 학생인권주체로서의 교사 인정 정도(교사)	74
<표 II-91> 교사 참여 보장 필요도(교사)	75
<표 II-92> 교사 참여 보장 정도(교사)	75
<표 II-93> 과도한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76
<표 II-94> 교육행정의 현장 이해 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76
<표 II-95> 학교장 및 상급자의 교육마인드 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77
<표 II-96> 교사와 학생간 소통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77
<표 II-97> 과도한 수업시간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78
<표 II-98> 교육예산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78
<표 II-99> 보호자의 과도한 간섭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79
<표 II-100> 가정 내 학생 지지 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79
<표 II-101> 학생 수업 방해 여부와 교육활동 상관관계	80
<표 II-102> 교권 인식(교사)	80
<표 II-103> 교사 처벌 유형(교사)	81
<표 II-104> 학생 결정능력 신뢰여부(교사)	81
<표 II-105> 학생 사회문제 참여여부(교사)	82
<표 II-106> 학교문제 해결 과정 내 학생참여여부(교사)	82
<표 II-107> 남녀학생 번호배정과 차별(교사)	83
<표 II-108> 초등학생 일기검사와 차별(교사)	83
<표 II-109> 학생 번호 호칭과 인격권 침해(교사)	84
<표 II-110> 학생 명찰 부착과 인격권 침해(교사)	84
<표 II-111> 직무 역량 평가(교사)	85
<표 II-112> 직업 성취도(교사)	85
<표 II-113> 직무 만족도(교사)	86
<표 II-114> 일과 피로도(교사)	86

<표 II-115> 대인관계에서의 무기력증(교사)	87
<표 II-116> 직무 피로도(교사)	87
<표 II-117>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학교장)	89
<표 II-118> 학생인권조례 인지여부(학교장)	89
<표 II-119> 학생인권조례 영향평가(학교장)	90
<표 II-120> 헌법 및 교육기본법 내 인권보장조항 인지여부(학교장)	90
<표 II-121> 성적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학교장)	91
<표 II-122>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학교장)	91
<표 II-123> 학습 선택권 보장여부(학교장)	92
<표 II-124>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여부(학교장)	92
<표 II-125> 각서 및 반성문 작성강요여부(학교장)	93
<표 II-126> 정기 학급회의 및 학생회여부(학교장)	93
<표 II-127> 학생 의견 반영여부(학교장)	94
<표 II-128> 자율적 동아리 활동여부(학교장)	94
<표 II-129> 학교폭력 피해 경험여부(학교장)	95
<표 II-130>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여부(학교장)	95
<표 II-131> 교사 체벌 경험여부(학교장)	96
<표 II-132> 교육활동 장애요인(학교장)	96
<표 II-133> 보호자 성적관련 압력(학교장)	97
<표 II-134> 보호자 학교활동 참여도	97
<표 II-135> 교사 신뢰 정도(학교장)	98
<표 II-136> 교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 분포	98
<표 II-137> 교권 인식(학교장)	99
<표 III-1> 집단면접조사 대상	103
<표 IV-1> 강원도 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141
<표 IV-2> 학교생활만족도(PISA)와 학생인권요소와의 관계	142
<표 IV-3> 학교생활만족도(PISA)와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등	143
<표 IV-4> 학교생활만족도(PISA)와 수면시간 및 가족과의 시간	144
<표 IV-5>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생차별 요인 간의 상관표	145
<표 IV-6> 차별 없이 공정한지에 대한 주체별 설문결과	146

<표 IV-7> 차별과 다른 학생인권요인의 상관관계	146
<표 IV-8> 차별과 교사 피로도(MBI) 등과의 관계	147
<표 IV-9> 차별과 학교장의 교사의 신뢰도	148
<표 IV-10> ‘학교와 선생님은 성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하는가’	149
<표 IV-11> 학교 구성요소와 차별의 상관관계	149
<표 IV-12> 폭력 관련 학생설문 결과 비교표	150
<표 IV-13> 학교 구성 사항 등과 학교 폭력의 관계	151
<표 IV-14> 학교규모별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 - 교사	151
<표 IV-15> 학교규모와 교사의 체벌-학생	152
<표 IV-16> 학교규모와 교사의 언어폭력-학생	152
<표 IV-17> 폭력 요인간의 상관표 - 학생	152
<표 IV-18> 가정형태와 학생간 신체 폭력 - 학생	153
<표 IV-19> 가정형태와 학생간 언어폭력 - 학생	153
<표 IV-20> 가정형태와 집단 따돌림 - 학생	153
<표 IV-21> 폭력과 여타 학생인권요인과의 관계 - 학생	154
<표 IV-22> 폭력과 여타 학생인권요인과의 관계 - 교사	154
<표 IV-23> 폭력과 여타 학생인권요인과의 관계 - 학교장	155
<표 IV-24> 방과 후 수업 선택권 보장 여부	156
<표 IV-25> 설립유형별 방과 후 수업 선택권 보장 추이-학생	156
<표 IV-26>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각 주체별 설문결과 비교	157
<표 IV-27> 성적 공개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	157
<표 IV-28> 성적공개와 타 요소와의 상관관계	158
<표 IV-29> 설립유형별 답변을 분석	158
<표 IV-30> 의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등의 강요	159
<표 IV-31> 학생자치와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	160
<표 IV-32> 설립유형별 학생참여도	160
<표 IV-33> 교사의 직무피로도(MBI)와 학생인권요소 등과의 관계	161
<표 IV-34> 학교장의 경청도와 교사 피로도	161
<표 IV-35> 교사의 학생인권 주체성인정과 피로도	161
<표 IV-36> 수면시간의 여타 요인과의 관계	162

<표 IV-37> 가정형태별 평균가족시간	162
<표 IV-38> 차별과 가족시간	163
<표 IV-39> 가족시간과 수면시간 및 설립유형	163
<표 IV-40> 가족시간과 가정에서의 폭력 등	163
<표 IV-41> 중학교 학생들의 가족형태별 상담 창구	164
<표 IV-42> 가정 형태 등과 학생들의 상담창구 - 학생	164



제 1 장
개 요

제 1 장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학교 인권보장의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 증가

우리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교육기본법 제2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시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공간에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청소년은 불완전한 미성숙의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규범화된 것이 바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며, 한국(1991년 가입)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국내적으로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생 자살률, 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규범적으로는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청소년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국내외 규범들에 근거하여 두발 제한, 일기장 검사, 체벌, 성별 및 성적 등에 의한 차별 등 개별적인 권고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¹⁾ 등 학교 현장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²⁾

1) 국가인권위원회 2012.7.30.자 결정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표 I-1>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비교³⁾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구분	200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원인	사망자	원인	사망자	원인	사망자	원인	사망자
1위	교통사고	19.3	자살	6.4	자살	15.3	자살	13.0
2위	자살	8.7	교통사고	5.5	교통사고	8.3	교통사고	8.3
3위	암	4.9	암	3.1	암	3.8	암	3.6
4위	익사사고	3.5	익사사고	1.1	심장질환	1.0	심장질환	1.2
5위	심장질환	1.8	선천기형	0.7	익사사고	0.8	익사사고	1.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년도, 「청소년 통계(2012년)」

< 표 I-2 > 청소년(15~19세)의 자살에 대한 증동 이유(2010년)⁴⁾

구분	성적, 진학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직장문제	기타
비율(%)	53.4	11.2	12.6	10.5	1.6	10.7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백서 2011」, 통계청 「사회조사(2010년)」

이러한 학교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부족하다.⁵⁾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지역교육청단위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교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위에 이미 학교 인권과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⁶⁾

2)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결정에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근거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 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방안 개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항들을 중심으로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위 결정문에서 재인용.
 4) 국가인권위원회 위 결정문에서 재인용.
 5) 국가인권위원회 위 결정에서 장명숙 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악화의 원인 진단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가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제정상권한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의무를 해태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6) 오동석 '학교에서의 인권개선과 생활문화 개선 방안', 2012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개선과 자율·존중의 학교생활문화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 -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문화'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원교육의 미래상을 목표로 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5대 핵심 추진 사업 중의 하나를 '학교 인권 개선'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통합적인 교육공동체의 인권향상을 지향하고 있는 유엔인권교육지침과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이라는 틀을 학교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볼 수 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학교교육의 각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과 공감의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학교 문화를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의미가 크다.⁷⁾

○ 강원학교인권 실태파악과 학교인권 정립 방안의 필요성

학교인권 정립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단계별 추진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 하나인 학교인권조례안은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조례안을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의 어려움이 산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 자체가 보다 더 단단한 학교인권이 자리잡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학교인권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먼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강원도교육청 관할 내 학교에서의 인권상황을 점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장의 인권적 요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학교구성원들이 조례에 담겨질 주요 조항들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규범체계인 「유엔 아동인권 조례」등 국제기준과 관련 법률 및 국가

7) 2012.04.26.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

인권위원회 결정 등 국내기준과 조례와의 관계 및 그 규범들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 보편적 인권기준에 의한 강원도 학생인권 실태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 ◇ 국내외 학교인권 관련 규범의 내용 및 강원학교인권조례안과의 관계 분석
-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한 강원학교인권체계 점검
- ◇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방안 제시 등 포괄적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모색

□ 학생인권 실태 전반에 대한 교육주체별·영역별 조사 및 분석

○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은 제2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의 구체적 인권보장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학생 인권의 진흥을 위한 인권교육 등 인권보장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규정하고 있다.

○ 조례(안)의 주요규정의 실행가능성 및 적정성에 대한 설문 및 전문가자문, 강원도 학교인권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여 강원학교인권조례(안) 추진 자료 및 관련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주요 국제 및 국내 기준의 내용 및 강원학교인권조례안 분석

○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을 포함하여, 학교인권을 정립하기 위한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성해 보아야 한다. 물론 조례(안)의 제2조 제4호의 ‘학생의 인권’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헌법과 법령,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의 상위 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위헌 논란 및 조례시행과정에서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 국제기구의 지침 및 권고 등

상위규범과 그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 주요 조항의 입법취지 및 규정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학생인권 보장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인권조례가 의결조차 되지 못하고 있거나, 의결·공포된 시·도에서도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인권정책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인권정책의 지속적 발전체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 인권친화적 학교 모델 제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 및 강원도교육청의 인권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학생·교사·보호자 및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기관·학생·교사·보호자의 인권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유기적 협력 방안을 지원한다.

- ‘학교인권조례’의 촉진 ‘학교인권문화’의 확산 및 질적 성장을 위한 내부교육 시스템과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등 국내외 인권기준에 명시된 아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 의무를 강원 교육의 기본가치로 천명하고, 교육청 및 학교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 관련 업무가 종합적·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방안 제시 > 학교공동체의 인권향상

○ 마치 학생인권과 대립 갈등관계로 비춰지고 있는 교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교라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의 인권이 함께 신장되거나 지체되는 협력관계적 관계임을 볼 수 있었다.

-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과 인권에 대한 향상은 학교공동체의 구성원 전체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 가. 연구 대상 : 교육공동체 주체별 (학생, 보호자, 교사, 교장) 조사
- 나.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인터뷰, 설문 등
- 다. 연구 과정



□ 문헌연구

○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의 주요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령,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 국제기구에서의 지침 및 권고 등의 문헌을 수집·분석한다.

□ 경험연구

○ 국내의 관련 기준 및 강원학교인권조례(안)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강원도 지역 학생인권 실태를 교육주체별·영역별로 조사 및 분석한다.

○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였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한다. 학교현장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인권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는 물론 심층면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및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 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표본집단조사, 강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농에 대한 표본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경험연구 ※

1. 강원도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
2. 교육주체별 인권현황 설문문항 작성 및 조사
3. 도농 표본집단에 대한 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

○ 학교인권과 관련한 학계,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연구 방향의 설정 및 조사방법 개발, 조사의 수행, 결과 분석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다.

○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공청회 및 세미나 실시를 통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조율 및 한층 진보된 결론의 도출을 유도한다.

4. 연구의 기대효과

- ◆ 학교인권 정책의 의미와 인식 제고
- ◆ 강원도교육청내 학생인권 정책업무의 유기적 수행 및 효율성 강화
- ◆ 학교의 포괄적 구성원의 인권 신장
- ◆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통한 행복한 학교
- ◆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 학교인권 정책의 의미와 인식제고

○ 구성원들에게 학교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학교인권에 대한 이해 부

족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인권조례 제적 작업 추진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올바른 의미의 학생인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강원도교육청내 학생인권 정책업무의 유기적 수행 및 효율성 강화

○ 교육청 내 인권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중복 수행과 재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학생인권신장

○ 교육 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실현 및 보호 강화

- 차별금지, 신체 안전 보장, 프라이버시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 학생자치 활성화 등 헌법과 법률,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실현 기반을 공고히 한다.

○ 인권·평화·소통을 축으로 다음 세대의 성장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 운영의 학생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실현을 통해 학생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물론 궁극적으로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통해 행복한 학교,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 학교인권조례의 연구를 통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진정한 학교인권이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인, 이웃과 사회, 국가, 세계 및 자연과 조화, 상생의 관계 맺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 학교인권의 보장과정은 민주주의 가치실현, 양성평등, 다문화 존중, 존속 가능한 생태운동, 양극화 해소, 차별 없애기, 비폭력 국제협력, 평화통일지향 등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기 위한 교육과정임. 이를 통하여 행복한 학교,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강원혁신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강원학교인권체계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학교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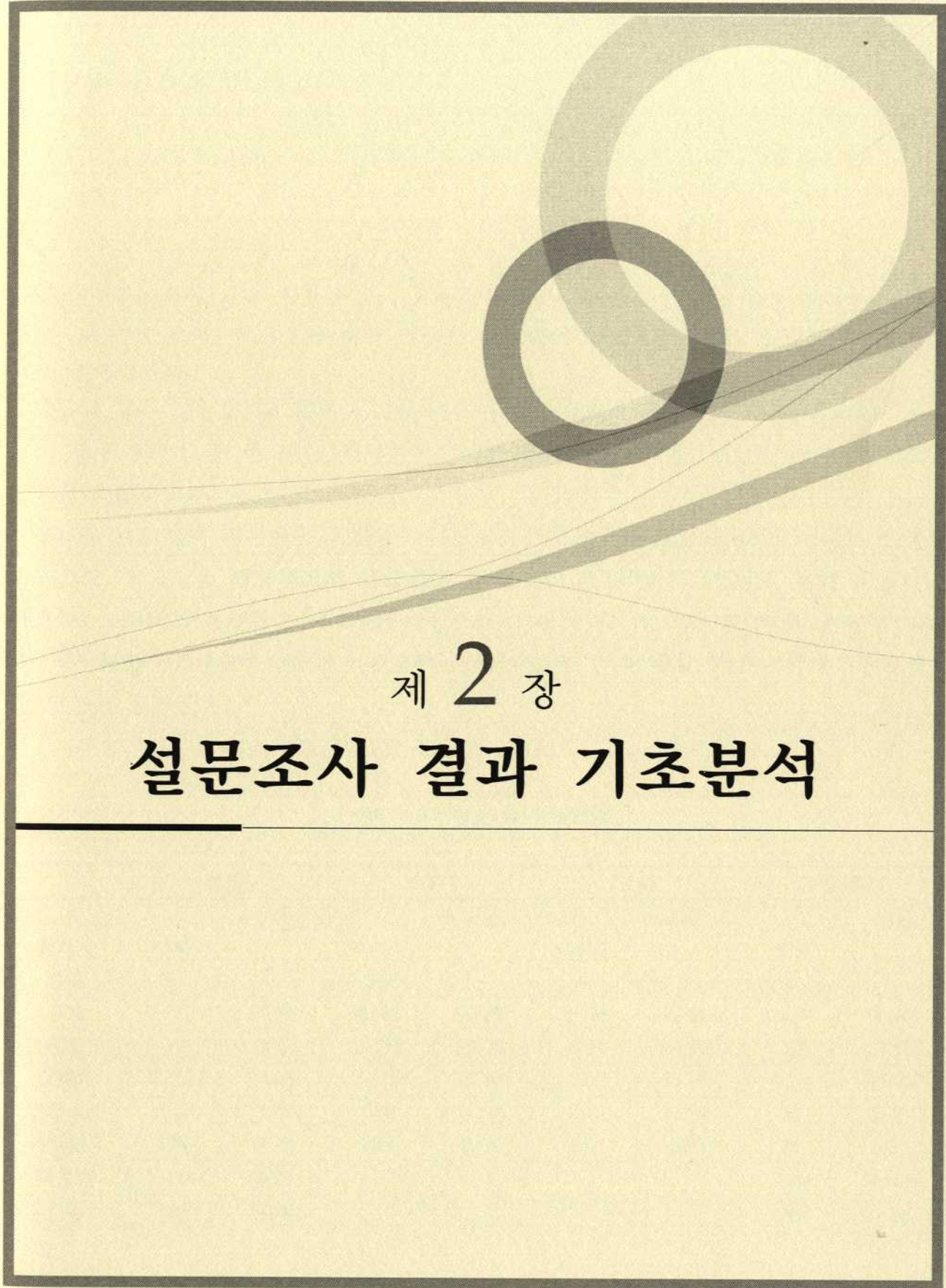
□ 강원학교인권체계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학생, 교사, 보호자 등의 설문조사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 과정을 통해 현재 의회에 제출된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의 내용이 학교인권추진의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추진동력으로 활용한다.

○ 강원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구조적 체계를 구성하며, 이를 단계별로 이끌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 실현가능성 높은 학교인권 증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학교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을 토대로 한 각각의 대안이 실제 학교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강원도교육청의 실현 가능성 높은 인권증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기초분석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기초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개요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학생은 강원교육과정보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보호자, 교사, 학교장에 대한 설문은 학교별로 모아 연구소로 우편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생의 경우 강원도 내 전체 학교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5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2학년 중 한 반을 특정하여 그 반 전체 학생이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교사와 보호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교사 5인 이내, 보호자 10인 이내로 표본을 추출하고, 학교장은 해당학교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강원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제외)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수거된 설문 현황에 따르면, 해당학교 630개교중 479개교(유효수는 464개교로 전체 대상 73.7%)가 우편송부방식의 설문에 응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참여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설문 참여자 현황

	학생		보호자		교사		교장/행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참가자	8,209		4,401		1,915		479	
결측	30		36		7		0	
유효	8,179	99.6%	4,365	99.2%	1,908	99.6%	464	96.9%
초등학교	3,251	39.7%	2,438	55.9%	850	44.5%	267	57.5%
중학교	2,767	33.8%	1,195	27.4%	633	33.2%	116	25.0%
인문계고	1,763	21.6%	508	11.6%	295	15.5%	55	11.9%
특성화고	398	4.9%	224	5.1%	132	6.9%	26	5.6%
국공립	7,438	90.9%					416	99.6%
사립	740	9.0%					2	0.4%

2. 학생 설문 참여자 현황

<표 II-2> 학교 설립 형태별

	국공립		사립		유효수
전체	7,438	91.0%	740	9.0%	8,179
초등학교	3,201	98.5%	50	1.5%	3,251
중학교	2,447	88.4%	320	11.6%	2,767
인문계고	1,451	82.3%	312	17.7%	1,763
특성화고	340	85.4%	58	14.6%	398

<표 II-3> 학교 규모별(학년당 학생수)

	~30명		~100명		100명~		유효수
전체	2,050	25.1%	2,576	31.5%	3,552	43.4%	8,179
초등학교	1,145	35.2%	1,056	32.5%	1,050	32.3%	3,251
중학교	636	23.0%	798	28.8%	1,333	48.2%	2,768
인문계고	231	13.1%	540	30.6%	992	56.3%	1,763
특성화고	38	9.5%	182	45.7%	178	44.7%	398

<표 II-4> 학생 가정 유형별

	운동선수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조부모		해당없음		유효수
전체	421	5.1%	766	9.4%	194	2.4%	61	0.7%	234	2.9%	6,503	79.5%	8,179
초등학교	217	6.7%	244	7.5%	85	2.6%	18	0.6%	68	2.1%	2,619	80.6%	3,251
중학교	122	4.4%	270	9.8%	52	1.9%	24	0.9%	102	3.7%	2,197	79.4%	2,767
인문계고	51	2.9%	189	10.7%	49	2.8%	14	0.8%	48	2.7%	1,412	80.1%	1,763
특성화고	31	7.8%	63	15.8%	8	2.0%	5	1.3%	16	4.0%	275	69.1%	398

3. 교사 설문 참여자 현황

<표 II-5> 교사 성별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전체	1,908	1,061	55.6%	847	44.4%
초등학교	848	506	59.7%	342	40.3%
중학교	633	355	56.1%	278	43.9%
인문계고	295	140	47.5%	155	52.5%
특성화고	132	60	45.5%	72	54.5%

<표 II-6> 교사 지역별 비율

	전체	리	읍면군	시			
전체	1,878	148	8.0%	1,030	54.9%	697	37.1%
초등학교	838	84	10.0%	433	51.7%	321	38.3%
중학교	628	56	8.9%	371	59.1%	201	32.0%
인문계고	280	5	1.8%	150	53.6%	125	44.6%
특성화고	132	6	4.5%	76	57.6%	50	37.9%

<표 II-7> 교사 연령별 비율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1,910	269	14.1%	604	31.6%	592	31.0%	436	22.8%	9	0.5%
초등학교	850	150	17.6%	316	37.2%	289	34.0%	92	10.8%	3	0.4%
중학교	627	62	9.8%	141	22.3%	191	30.2%	235	37.1%	4	0.6%
인문계고	275	36	12.2%	99	33.6%	79	26.8%	79	26.8%	2	0.7%
특성화고	132	21	15.9%	48	36.4%	33	25.0%	30	22.7%	0	0.0%

<표 II-8> 교사 근무년수별 비율

	전체	-2	2-5	5-10	10-20	20-					
전체	1,908	218	11.4%	249	13.1%	256	13.4%	547	28.7%	638	33.4%
초등학교	850	80	9.4%	135	15.9%	152	17.9%	317	37.3%	166	19.5%
중학교	631	88	13.9%	45	7.1%	41	6.5%	132	20.9%	325	51.5%
인문계고	295	30	10.2%	44	14.9%	41	13.9%	74	25.1%	106	35.9%
특성화고	132	20	15.2%	25	18.9%	22	16.7%	24	18.2%	41	31.1%

4. 학교장 설문 참여자 현황

<표 II-9> 학교장 성별 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
합계	463	43	420	9.3%
초등학교	267	33	234	12.4%
중학교	116	10	106	8.6%
인문계고	55	0	55	0.0%
특성화고	25	0	25	0.0%

* 설문 참여 여학생비율은 47.9%, 여교사비율은 58.2%인데 비해, 여교장의 비율은 현격히 낮다.

<표 II-10> 학교장 연령별 비율

	유효수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합계	454	0 0.0%	1 0.2%	199 43.0%	263 56.8%
초등학교	261	0 0.0%	1 0.4%	124 46.0%	142 53.6%
중학교	115	0 0.0%	0 0.0%	43 37.4%	73 62.6%
인문계고	53	0 0.0%	0 0.0%	18 34.0%	37 66.0%
특성화고	25	0 0.0%	0 0.0%	14 56.0%	11 44.0%

<표 II-11> 학교장의 교사 근무연수 분포

	유효수	-10년	11-20년	21-30년	30년이상
합계	454	3 0.7%	9 2.0%	84 18.5%	358 78.8%
초등학교	261	0 0.0%	4 1.5%	62 23.8%	195 74.7%
중학교	115	1 0.9%	2 1.8%	13 11.4%	99 86.0%
인문계고	53	0 0.0%	1 1.9%	5 9.4%	47 88.7%
특성화고	25	2 8.0%	2 8.0%	4 16.0%	17 68.0%

5. 보호자 설문 참여자 현황

<표 II-12> 보호자 지역별 현황

	리	읍면군	시
전체	4,401 449 10.2%	2,508 57.0%	1,444 32.8%
초등학교	2,465 311 12.6%	1,335 54.2%	819 33.2%
중학교	1,209 110 9.1%	743 61.5%	356 29.4%
인문계고	501 9 1.8%	296 59.1%	196 39.1%
특성화고	226 19 8.4%	134 59.3%	73 32.3%

<표 II-13> 설문 참여 보호자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기타
전체	80.5%	16.2%	1.8%	0.7%	0.8%
초등학교	82.1%	14.8%	1.5%	0.7%	1.0%
중학교	77.3%	18.4%	2.8%	0.8%	0.7%
인문계고	81.6%	16.4%	1.0%	0.8%	0.2%
특성화고	77.4%	19.5%	2.2%	0.4%	0.4%

<표 II-14> 설문참여 보호자의 가정 유형별 분류

	운동선수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조부모	해당없음
전체	1.0%	8.9%	2.7%	1.7%	3.8%	81.4%
초등학교	1.1%	8.0%	3.1%	1.8%	3.5%	81.7%
중학교	0.7%	9.2%	2.6%	1.6%	4.7%	80.7%
인문계고	1.0%	9.4%	1.8%	1.0%	2.9%	83.5%
특성화고	0.4%	15.6%	1.3%	1.8%	4.0%	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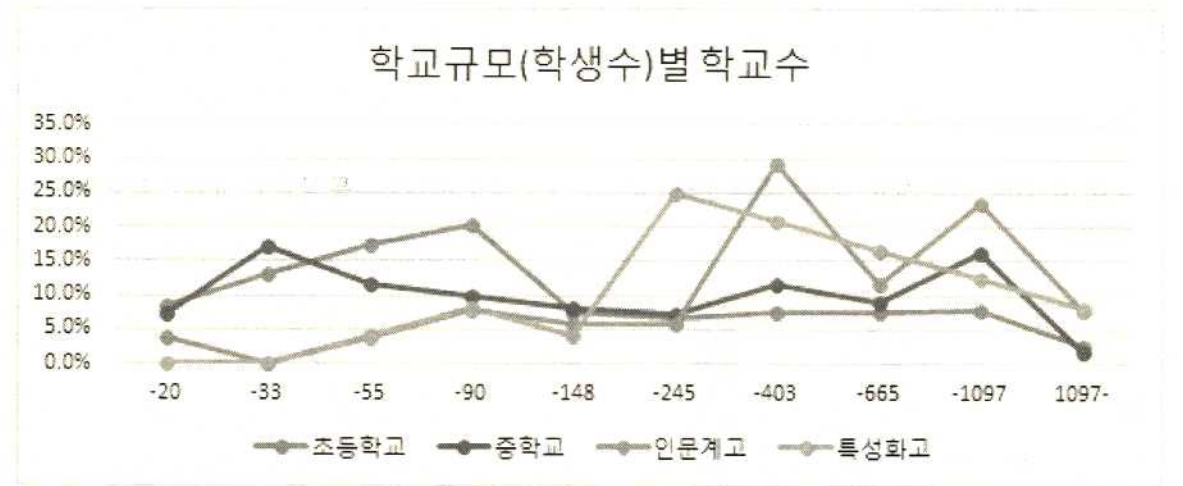
* 강원권에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타 지역에 비해, 한부모가정이 높은 편으로, 특성화고에서 한부모가정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설문 참여 학교(보호자, 교사, 학교장) 행정 사항

<표 II-15> 학급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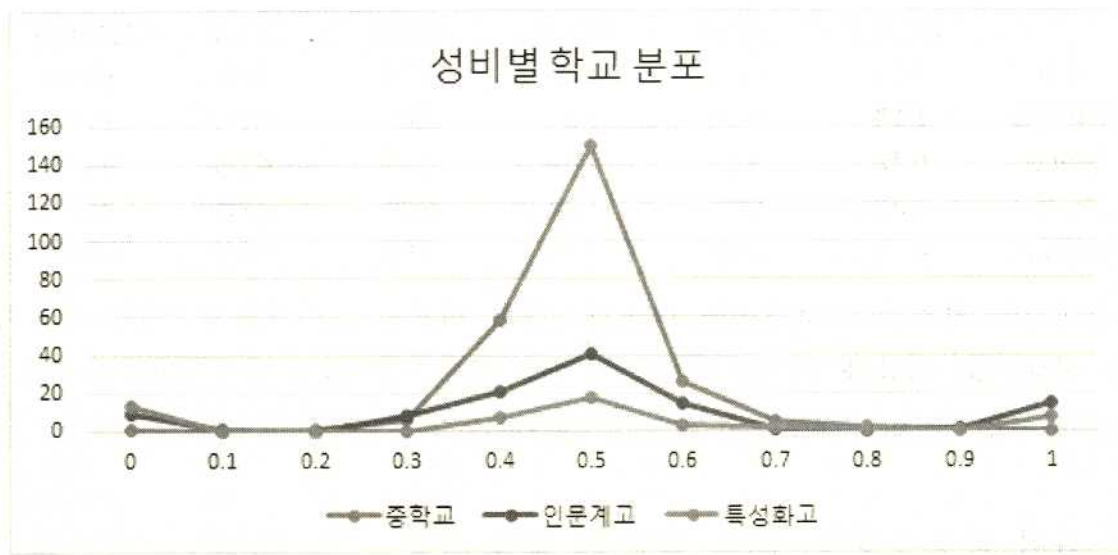
	10명이하	11~15	16~20	21~25	26~30	31명이상	유효수
전체	125 26.9%	60 12.9%	52 11.2%	62 13.3%	94 20.2%	72 15.5%	465
초등학교	104 40.2%	43 16.6%	35 13.5%	33 12.7%	37 14.3%	7 2.7%	259
중학교	19 15.2%	13 10.4%	7 5.6%	18 14.4%	33 26.4%	35 28.0%	125
인문계고	2 3.6%	2 3.6%	5 9.1%	1 1.8%	18 32.7%	27 49.1%	55
특성화고	0 0.0%	2 7.7%	5 19.2%	10 38.5%	6 23.1%	3 11.5%	26

<표 II-16> 학교규모(학생수)별 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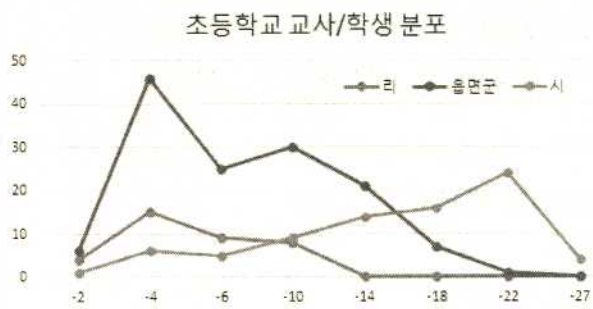
*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과소한(학년당 15명 이하) 학교가 나타남
* 중, 고등학교에서 과다한 학교가 나타남

<표 II-17> 성비별 학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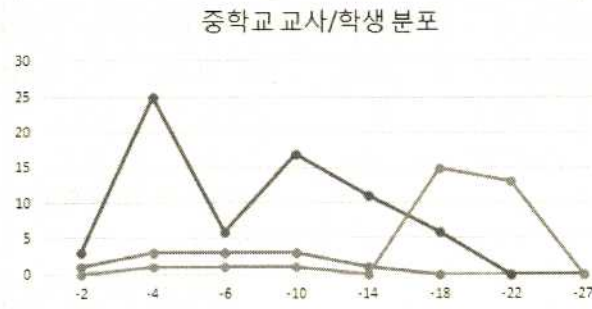


◆ 남학교나 여학교의 비율은 낮으며, 남녀공학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학생이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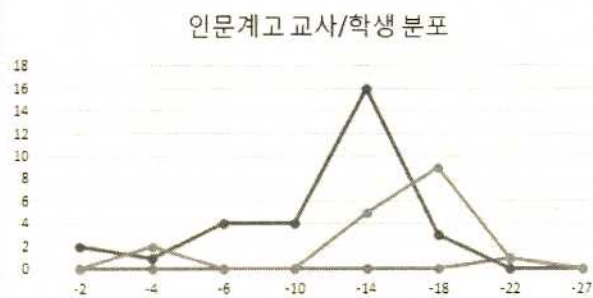
<표 II-18> 초등학교 교사/ 학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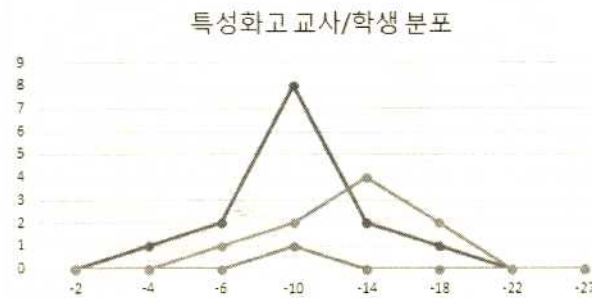
<표 II-19> 중학교 교사/ 학생분포



<표 II-20> 인문계고 교사/ 학생분포



<표 II-21> 특성화고 교사/ 학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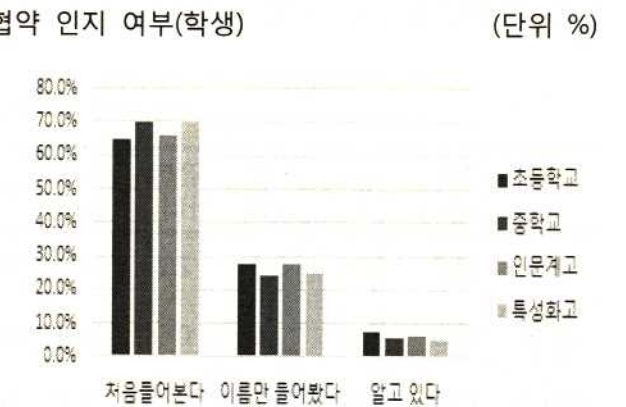
제2절 학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학생인권보장제도

1-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표 II-22>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학생)

	처음 들어본다	이름만 들어봤다	내용도 알고있다	점수
전체	67.0	26.5	6.5	19.8
초등학교	64.5	28.0	7.5	21.5
중학교	69.9	24.2	5.9	18.0
인문계고	66.2	27.7	6.1	20.0
특성고	70.1	24.9	5.0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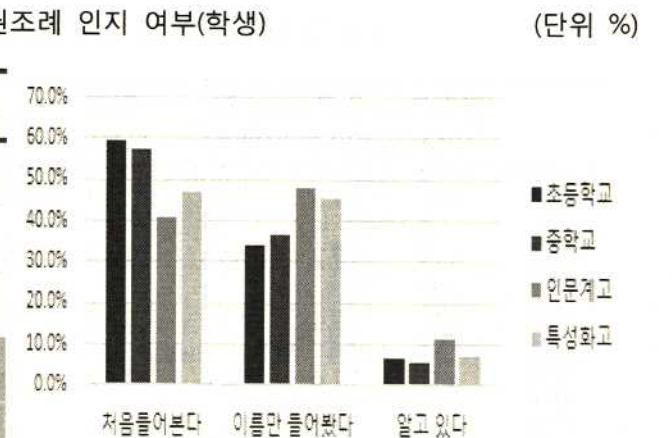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의 67%의 학생이 처음 들어본다고 답변해 강원도 내 학생들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인식수준이 높은 원인을 찾아 다른 학교군에서의 인권교육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1-2)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표 II-23> 학생인권조례 인지 여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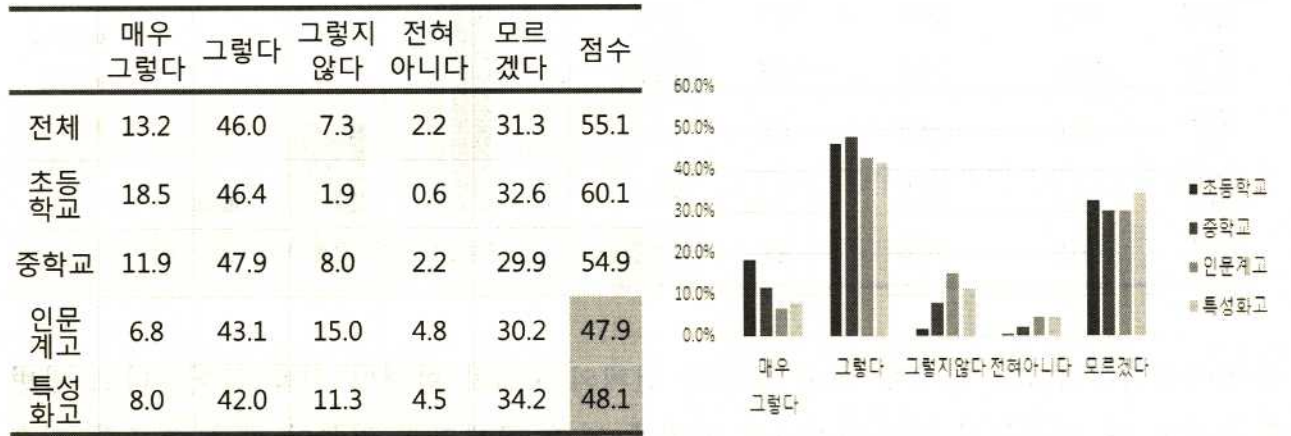
	처음 들어본다	이름만 들어봤다	내용도 알고있다	점수
전체	54.2	38.5	7.3	26.6
초등학교	59.6	33.9	6.5	23.5
중학교	57.4	36.8	5.8	24.2
인문계고	40.8	48.0	11.2	35.2
특성고	47.2	45.5	7.3	30.0



학생인권조례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에서와 달리 고등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체와의 접촉 가능성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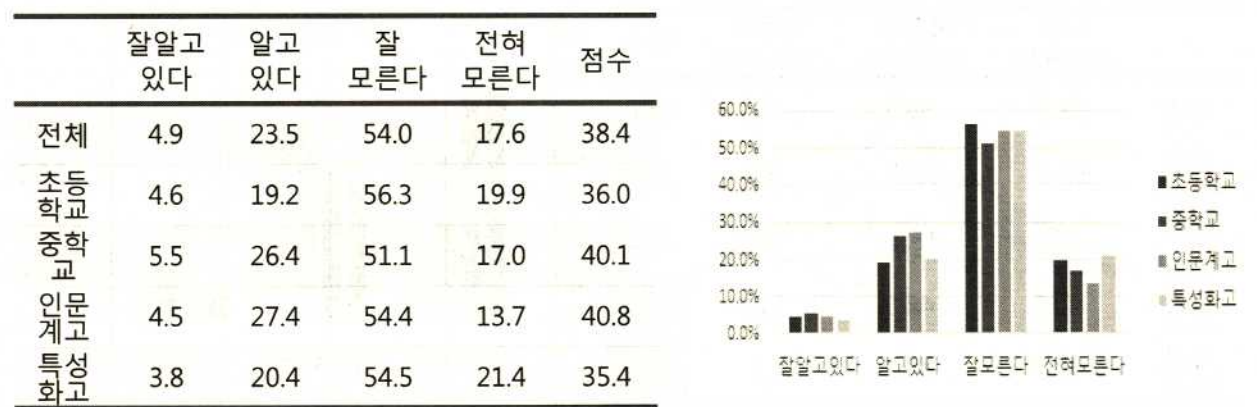
<표 II-24>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생) (단위 %)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설문에서 전체 학생의 60%에 달하는 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특이점으로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생과 중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4)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의하여도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표 II-25> 헌법 및 교육기본법 내 인권보장조항 인지 여부(학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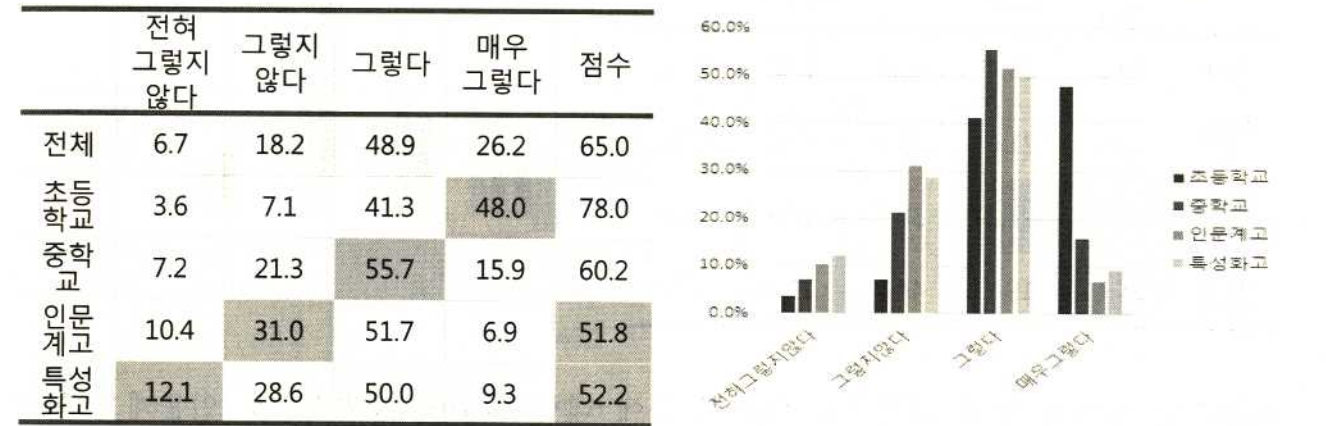


설문 결과 학생들은 헌법상 국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들과 교육기본법상의 일련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

2-1) 학교와 선생님은 성적과 관계없이 공정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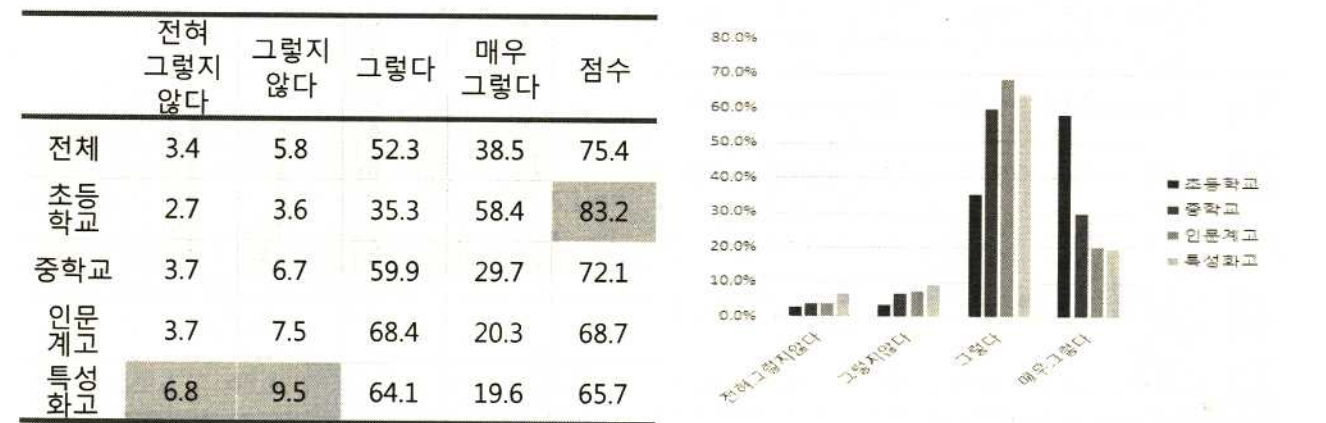
<표 II-26> 성적에 따른 차별 존재 여부(학생) (단위 %)



성적에 의한 차별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 중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성적에 의한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입시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성이 밀접해질수록 차별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2) 학교와 선생님은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공정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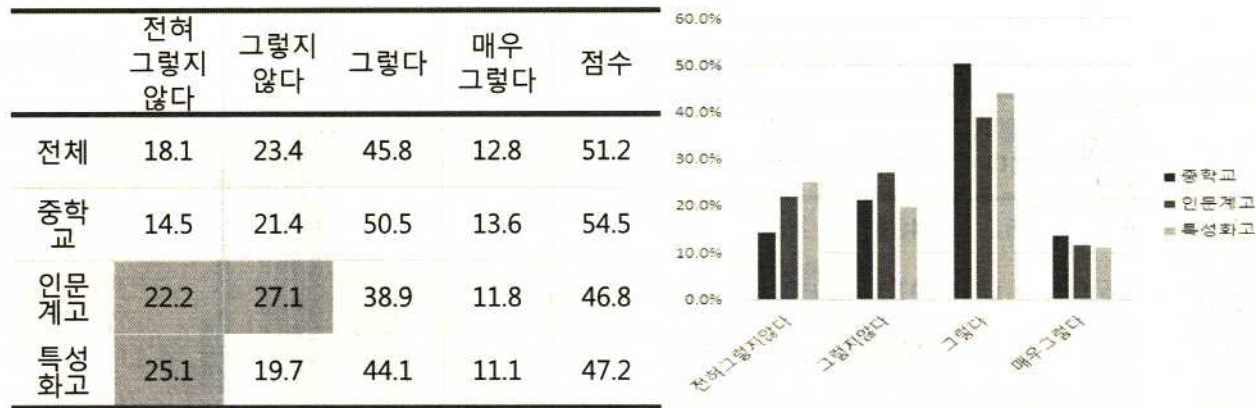
<표 II-27>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존재 여부(학생) (단위 %)



학교군 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차별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교군보다 가정형편에 의한 차별을 한층 더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3) 아침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의 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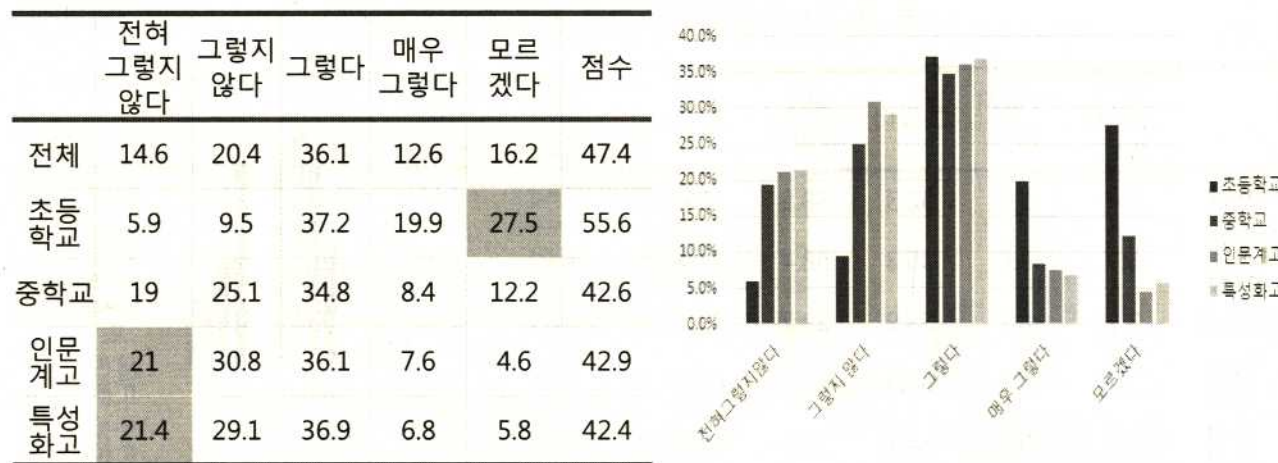
<표 II-28>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학생) (단위 %)



보충수업 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상대적으로 인문계고 학생들이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시와의 관련성이 높은 이유에서라고 보이며, 특히 강원도 내 학교의 전반적인 보장 수준이 다른 조사에서 파악된 전국 학교에서의 보장 수준을 다소 하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2-4) 두발(머리길이 및 모양)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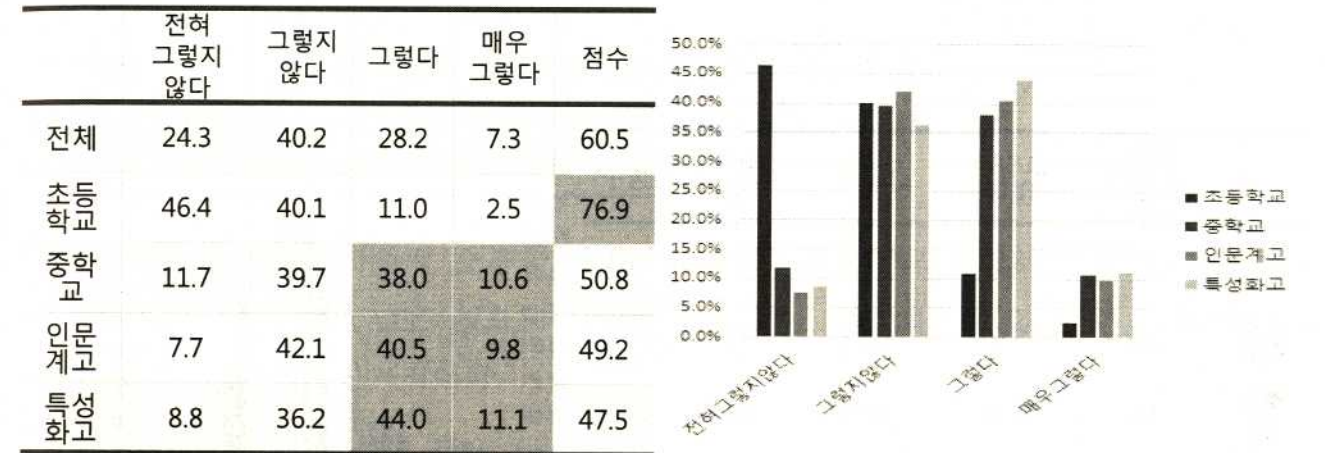
<표 II-29>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여부(학생) (단위 %)



두발 등을 통한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설문에서 학생들의 답변이 긍정과 부정으로 절반 정도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27.5%나 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건대 아직 개성실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복 착용 여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2-5) 선생님은 개인의 성적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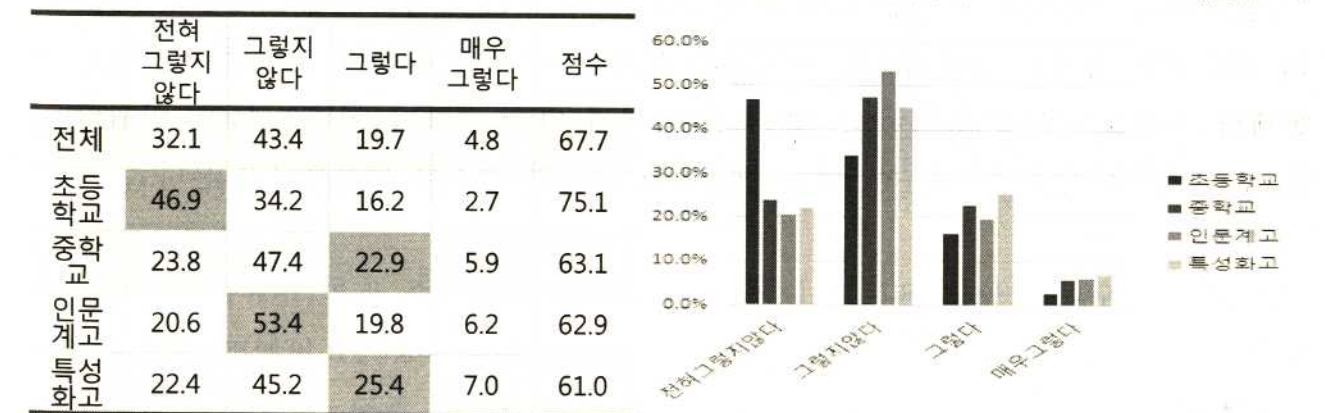
<표 II-30> 학교 성적 공개여부(학생) (단위 %)



개인의 성적이 공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성적에 의한 차별 여부에서와 유사한 답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 공개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의 순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학교에서 각서, 반성문 등의 작성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표 II-31> 각서 및 반성문 강요여부(학생) (단위 %)



각서나 반성문의 작성은 체벌을 대체하는 학생지도의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하게 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에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설문 결과 강원도 내 학교의 경우 이러한 각서나 반성문 작성 강요가 감소추세인 것으로 파악되나, 그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2-7) 학급회의, 학생회(학생대표회) 등이 열리나요?

<표 II-32> 정기 학급회의 및 학생회 여부(학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전체	2.7	8.5	57.8	30.9	72.5
초등학교	1.6	5.9	45.3	47.2	79.5
중학교	3.5	10.0	64.0	22.5	68.7
인문계고	2.9	9.1	69.1	19.0	68.2
특성화고	5.0	17.3	65.3	12.3	61.8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 운영에 대한 학생설문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그 운영비율이 높은 반면 특성화고의 경우 다른 학교 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의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

학급회의나 학생회의 운영은 다음의 설문과 함께 우리 교육기본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 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또한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타자화,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 토대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2-8) 학교규칙 및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학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표 II-33> 학생 의견 반영 여부(학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점수
전체	6.4	12.1	41.0	11.3	29.1	50.1
초등학교	2.9	6.5	36.5	16.6	37.4	53.2
중학교	6.9	12.5	45.4	9.1	26.1	50.2
인문계고	10.3	20.2	44.0	6.4	19.1	47.0
특성화고	14.6	19.8	33.9	5.3	26.4	39.8

앞의 설문결과와 유사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순으로 학생의 학교 정책에 대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성화고의 경우 특히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2-9) 자신의 고민을 누구와 주로 상담하나요? (복수 답변 가능)

<표 II-34> 고민 상담 대상(학생) (단위 %)

	친구	보호자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학원 선생님	기타	없다
전체	57.1	52.0	21.7	12.5	3.1	10.4	12.5
초등학교	41.8	61.3	24.6	11.4	2.6	9.3	13.4
중학교	62.2	46.8	19.5	17.7	3.1	11.0	13.6
인문계고	77.0	47.8	19.9	7.5	4.4	11.3	10.5
특성화고	74.1	39.4	21.9	9.5	2.0	11.6	9.3

이 설문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창구가 없다고 답변한 학생이 전체의 12.5%나 된다는 점과 그중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자신의 중요한 상담창구이나 중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비율은 줄면서 친구 및 상담선생님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친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상담선생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10)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표 II-35> 교사 처벌 유형(학생) (단위 %)

	방치	격리	체벌	벌점	손들기	상담	주의	기타
전체	3.9	18.5	3.4	13.0	1.8	0.9	55.1	3.3
초등학교	1.8	11.8	1.4	9.8	2.5	1.0	67.4	4.2
중학교	4.2	27.6	6.0	17.9	1.9	1.0	38.7	2.7
인문계고	6.2	17.4	3.3	11.7	0.8	0.6	57.0	3.0
특성화고	8.3	12.6	1.3	10.1	0.5	1.5	63.3	2.5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응에 대하여는 주의조치를 준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실 뒤나 복도에서 있게 한 것과 벌점을 준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2-11) 동아리 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표 II-36> 자율적 동아리 활동여부(학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점수
전체	4.9	8.3	50.7	25.5	10.6	65.7
초등학교	2.3	4.3	40.6	36.8	15.9	71.1
중학교	5.8	11.2	55.2	19.4	8.4	62.7
인문계고	6.7	10.5	60.9	17.0	5.0	62.8
특성화고	11.1	11.3	54.3	15.3	8.0	57.7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정적 답변이 20% 넘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르겠다의 답변이 15.9%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12) 하루 수면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인가요?

<표 II-37> 평균 수면 시간(학생) (단위 %)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7시간 이상	평균
전체	3.4	8.4	19.2	22.5	46.5	7.0
초등학교	2.5	1.8	7.0	16.5	72.2	7.5
중학교	2.1	5.1	18.5	30.3	44.0	7.1
인문계고	6.4	23.8	38.5	20.7	10.5	6.0
특성화고	6.8	15.6	36.9	23.4	17.3	6.3

강원도 내 전체 학생들의 평균수면 시간은 7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시와 관련성이 큰 학교군의 학생들일수록 수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폭력(체벌포함)

3-1) 친구들이나 선배로부터 맞은 적이 있나요?(선배에 의한 단체 기합 포함)

<표 II-38>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여부(학생)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점수
전체	92.7	4.0	1.6	0.7	1.0	96.7
초등학교	90.9	4.8	2.3	1.0	1.0	95.9
중학교	92.9	4.1	1.4	0.5	1.1	96.8
인문계고	95.7	2.6	0.7	0.6	0.4	98.1
특성화고	93.0	3.3	1.8	0.5	1.5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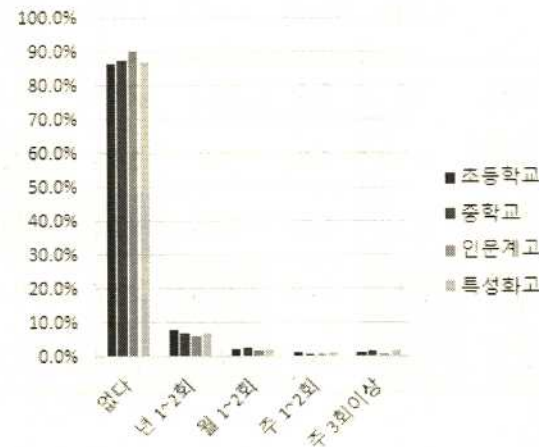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건대 미미하나마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초등학생의 10% 가까이가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점, 중학교와 특성화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문계고 학생들에 비해 잦은 폭력 경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2)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으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나요?

<표 II-39> 언어폭력 피해 경험여부(학생)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점수
전체	87.9	7.3	2.3	1.1	1.4	94.8
초등학교	86.7	8.1	2.4	1.6	1.3	94.4
중학교	87.5	7.3	2.6	0.8	1.9	94.4
인문계고	90.6	6.1	1.6	0.9	0.9	96.1
특성화고	87.2	7.0	2.5	1.3	2.0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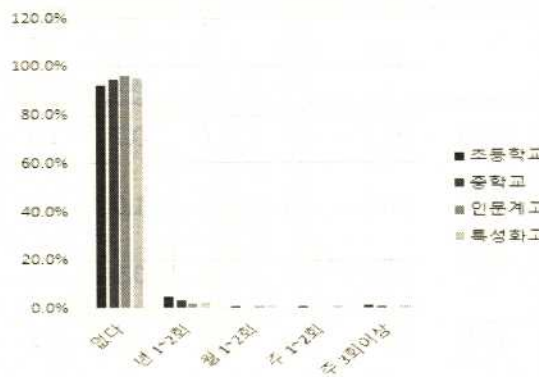
학생설문 결과 친구나 선후배에 의한 폭언의 경험은 신체폭력의 경우보다 약간 더 잦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3-3)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나요?

<표 II-40>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여부(학생)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점수
전체	94.0	3.5	0.8	0.7	0.9	97.3
초등학교	92.2	4.7	1.1	0.7	1.3	96.4
중학교	94.6	3.4	0.5	0.7	0.8	97.5
인문계고	96.4	1.8	0.8	0.5	0.5	98.3
특성화고	95.2	2.3	0.8	1.0	0.8	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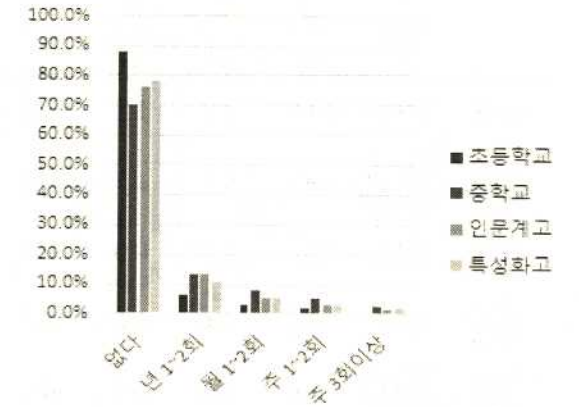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지의 설문에 대하여 다른 학교군보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약간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표 II-41> 교사 체벌 경험여부(학생)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점수
전체	78.9	10.5	5.5	3.5	1.7	90.3
초등학교	87.8	6.4	3.3	1.9	0.6	94.7
중학교	70.2	13.3	8.0	5.5	2.9	85.6
인문계고	76.4	13.4	5.4	3.1	1.7	89.9
특성화고	78.4	10.8	5.5	3.0	2.3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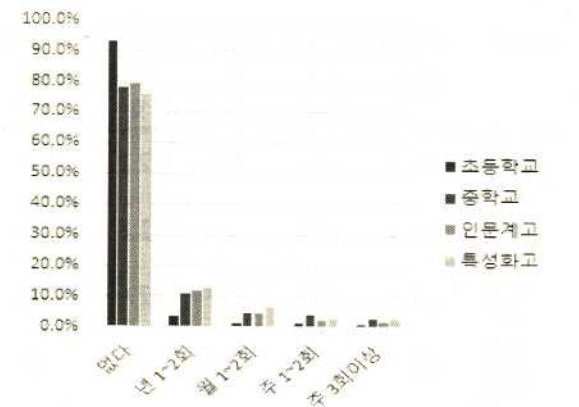
전체 학생의 78.9%가 체벌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중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벌에 대한 경험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3-5)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포함)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표 II-42> 교사 언어폭력 경험여부(학생)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점수
전체	84.0	8.4	3.4	2.4	1.7	92.7
초등학교	92.9	3.6	1.4	1.2	0.9	96.6
중학교	77.9	11.1	4.6	3.9	2.5	89.5
인문계고	79.5	11.9	4.6	2.4	1.6	91.3
특성화고	75.6	12.6	6.5	2.5	2.8	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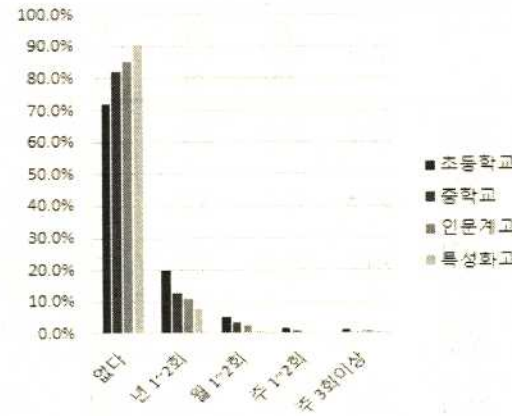
교사에 의한 폭언의 경험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를 보면, 그 경험의 빈도가 체벌보다

잘게 나타나며 체벌의 경우와 다르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잦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6) 가정에서 부모님(또는 다른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표 II-43> 가정 내 체벌 경험여부(학생)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점수
전체	79.3	14.9	3.9	1.1	0.8	92.7
초등학교	72.2	19.7	5.4	1.5	1.2	90.1
중학교	82.1	13.0	3.5	0.9	0.6	93.8
인문계고	85.3	11.0	2.4	0.6	0.7	94.9
특성고	90.5	7.8	0.8	0.5	0.5	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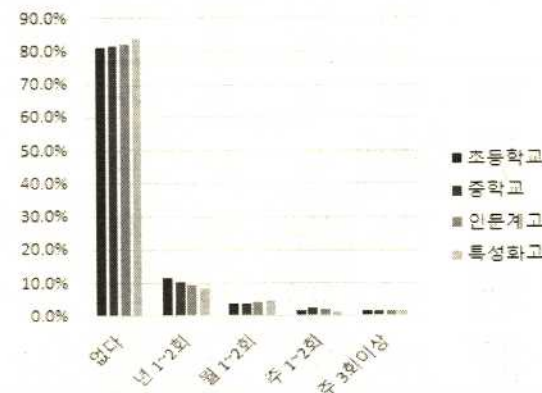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 가정에서 부모님(또는 다른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포함)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표 II-44> 가정 내 언어폭력 경험여부(학생)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점수
전체	81.7	10.4	4.1	2.1	1.7	92.0
초등학교	81.1	11.6	3.9	1.8	1.6	92.2
중학교	81.6	10.1	3.9	2.6	1.8	91.8
인문계고	82.3	9.3	4.4	2.2	1.8	92.0
특성고	83.9	8.5	4.5	1.3	1.8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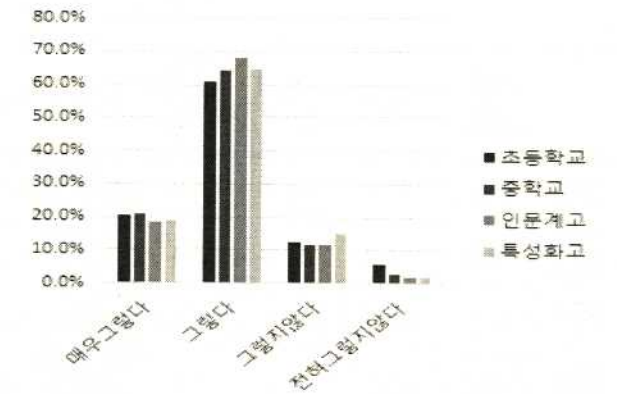


4. 학교생활 만족도(PISA)

4-1) 다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표 II-45> 자아 존중감 여부(학생)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
전체	20.1	63.8	12.2	3.9	66.9
초등학교	20.6	60.9	12.5	5.9	65.6
중학교	20.9	64.3	11.8	2.9	67.9
인문계고	18.3	68.1	11.5	2.1	67.7
특성고	18.6	64.6	14.8	2.0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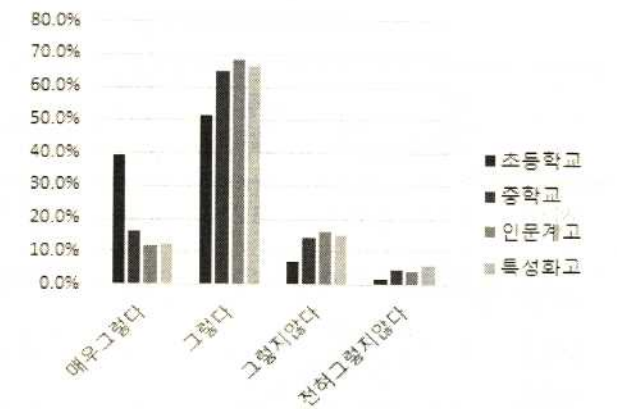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물어 본 설문으로, 이외 설문에서와 다르게 초등학생의 경우 낮은 평점을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러 면에의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주요 사회관계자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8)

4-2)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표 II-46> 교사의 학생의견 경청 정도(학생)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
전체	24.3	60.3	11.9	3.6	68.6
초등학교	39.5	51.3	7.3	2.0	76.2
중학교	16.4	64.8	14.1	4.7	64.5
인문계고	11.7	68.1	16.1	4.1	62.7
특성고	12.6	66.3	15.1	6.0	62.0



8) 특히 보호자 설문에서도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에서도 관련 있는 조사결과나 나타나고 있다.

전체 학생의 84.6%가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3)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

<표 II-47> 교사의 학생행복 관심 정도(학생)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점수
전체	17.5	41.2	12.3	4.8	24.2	55.9
초등학교	28.9	41.0	5.2	2.4	22.5	65.4
중학교	12.1	42.9	13.5	5.0	26.5	52.2
인문계고	7.0	40.8	21.5	7.9	22.9	46.7
특성화고	11.3	31.4	19.3	10.1	27.9	45.0

초등학생의 경우 69.9%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학교>인문계고>특성화고 순으로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현저히 적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인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제일 적고 특성화고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이 주목된다.

4-4) 나는 학교에서 즐겁게 지낸다.

<표 II-48> 즐거운 학교생활(학생)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
전체	35.2	53.8	8.2	2.8	73.9
초등학교	50.0	42.9	5.2	1.9	80.4
중학교	30.3	59.1	7.5	3.1	72.3
인문계고	19.5	64.3	12.5	3.7	66.7
특성화고	20.1	56.5	19.3	4.0	64.4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에서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학생들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설문 결과와 토대로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4-5) 학교에서의 생활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II-49> 학교생활 영향 평가(학생)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
전체	28.9	57.7	9.9	3.5	70.8
초등학교	44.7	49.0	4.7	1.5	79.1
중학교	20.8	63.6	11.6	4.0	67.2
인문계고	15.4	64.6	14.2	5.8	63.4
특성화고	18.3	55.3	21.4	5.0	62.4

전체 학생의 86.6%가 학교생활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교>중학교>인문계고>특성화고의 순으로 그 평가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5. 가족시간 및 가족형태

5-1)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식사, 대화, 놀이 등을 말하며, tv 시청 및 수면시간은 제외)은 어느 정도입니까?

<표 II-50> 가족과의 평균 여가시간(학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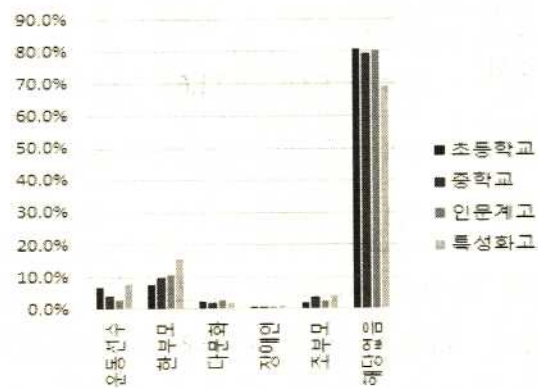
	거의 없다	~30분	~1h	~2h	2h~	평균
전체	12.4	10.7	18.4	20.9	37.7	1.8
초등학교	7.5	8.0	15.4	19.0	50.1	2.1
중학교	9.5	8.8	17.9	25.5	38.3	1.9
인문계고	21.8	17.6	24.1	18.5	18.0	1.2
특성화고	30.4	14.3	19.6	15.1	20.6	1.2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가족과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는 답변이 50%가 넘는 등 평균적으로 하루 2시간 이상을 가족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시와 취업의 부담이 큰 고등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거의 없다' 라는 답변도 30%가 넘는다는 점은 유념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다.

5-2)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표 II-51> 가정유형(학생) (단위 %)

	운동선수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조부모	해당없음
전체	5.1	9.4	2.4	0.7	2.8	79.6
초등학교	6.7	7.5	2.6	0.6	2.1	80.6
중학교	4.3	9.9	1.8	0.8	3.6	79.4
인문계고	2.8	10.6	2.8	0.8	2.7	80.3
특성화고	7.8	15.8	2.0	1.3	4.0	69.1



학생들의 가정형태를 살펴보면, 특성화고의 경우 한부모 가정과 조부모 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6. 소결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조례의 학생인권 보장성에 대한 평가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사회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2)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대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거의 일관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의 순으로 학생인권 보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입시와 취업에 대한 부담,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등의 문제와의 관계성이 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구체적으로는 학생회 운영, 동아리 활동, 개성 실현의 자유의 경우 그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파악되며, 학생 간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경우에 비해 빈도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생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교군보다 빈도수가 잦은 점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원도 내 학생들의 경우 성적 차별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관련된 성적 공개, 보충수업 선택 등 성적과 관련한 설문 결과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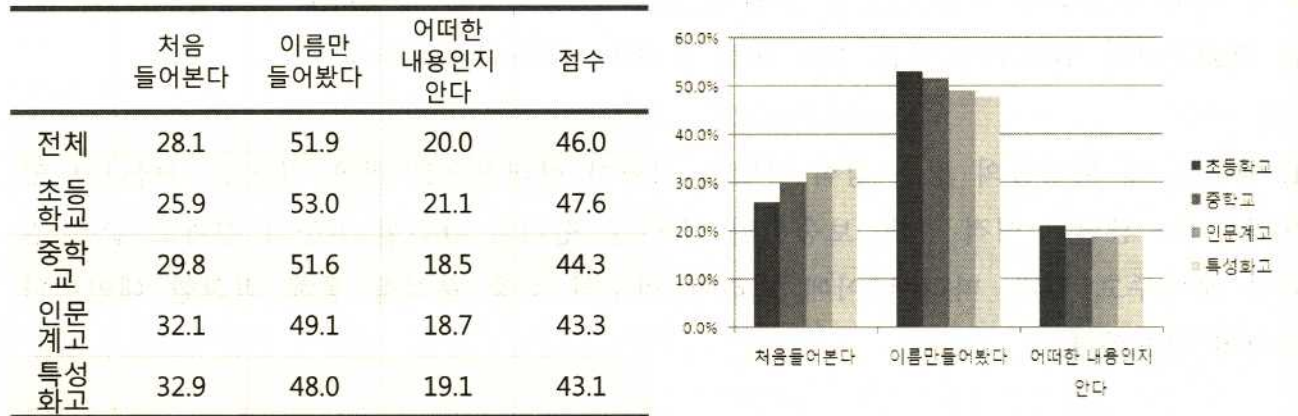
5)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보는 PISA 설문에서 높은 학교급일수록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학교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설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생활만족도를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제3절 보호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1-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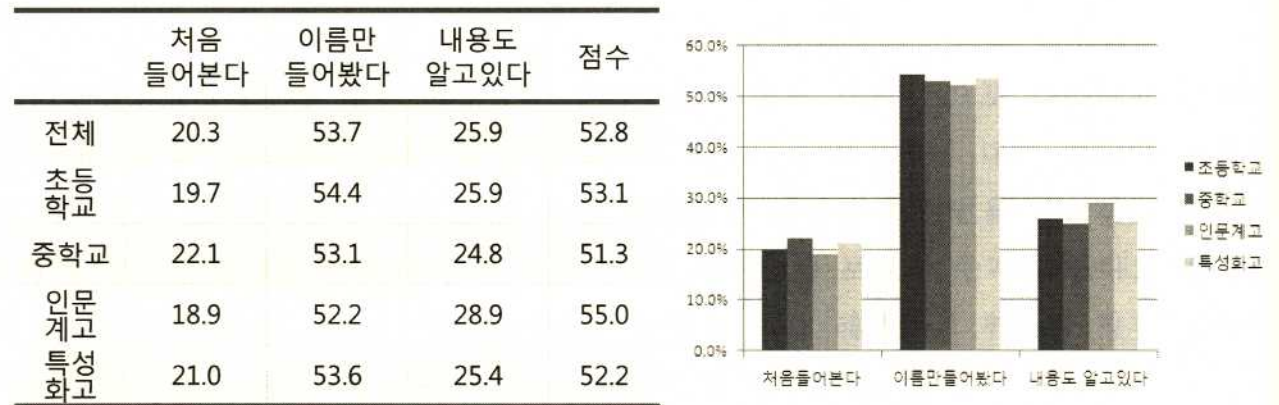
<표 II-52>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보호자) (단위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보호자 설문 결과를 보면, ‘이름만 들어봤다’ 는 답변이 가장 많고, ‘처음 들어본다’ 는 답변도 초등학교 보호자의 경우 25.9%, 중·고등학교 보호자의 경우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2)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표 II-53> 학생인권조례 인지여부(보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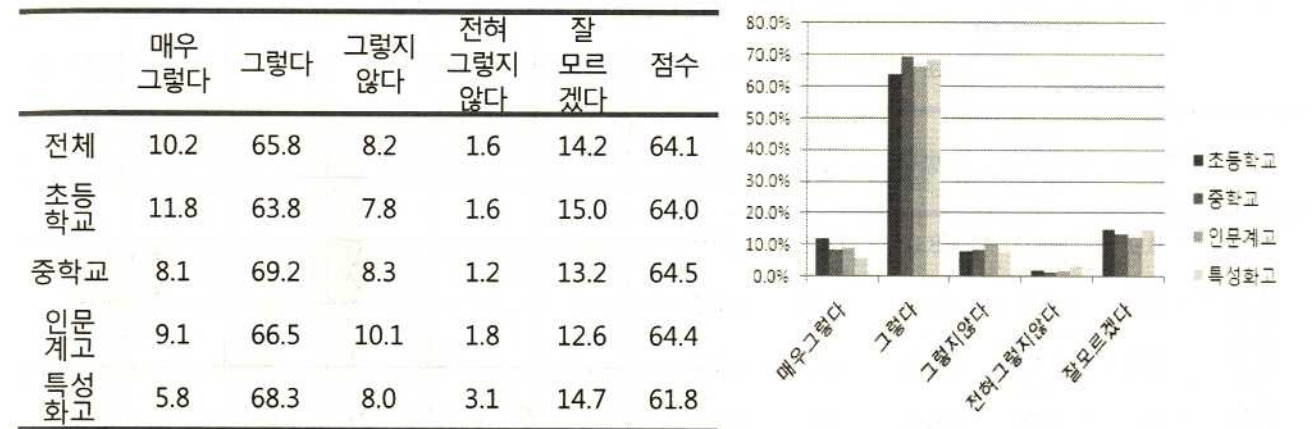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보호자 설문 결과에서도 ‘이름만 들어봤

다’ 는 답변이 가장 많고 ‘처음 들어본다’ 는 답변도 20% 전후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지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경우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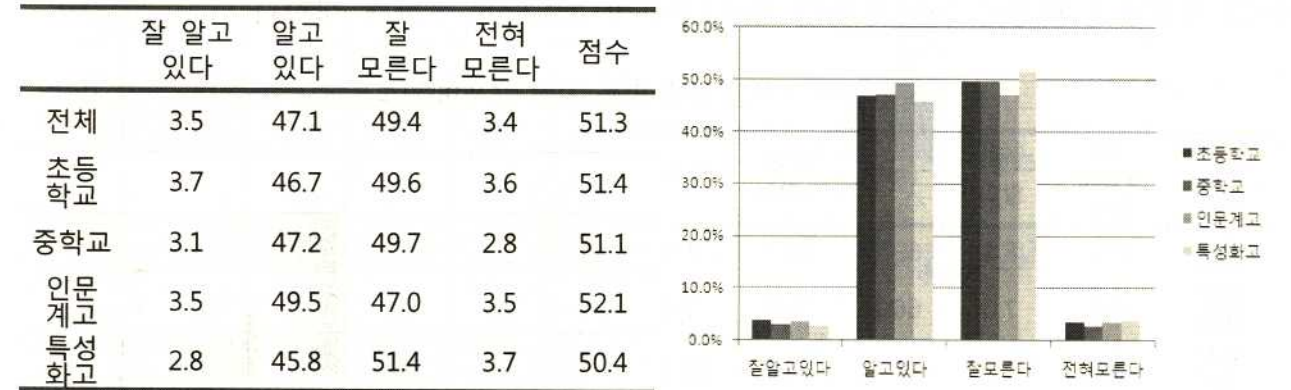
<표 II-54> 학생인권조례 영향평가(보호자) (단위 %)



보호자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10.2%, ‘그렇다’ 65.8%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8.2%는 ‘그렇지 않다’, 14.2%는 ‘잘 모르겠다’ 고 답변하는 등 회의적인 답변도 있다.

1-4) 우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표 II-55> 헌법 및 교육기본법 내 인권보장조항 인지여부(보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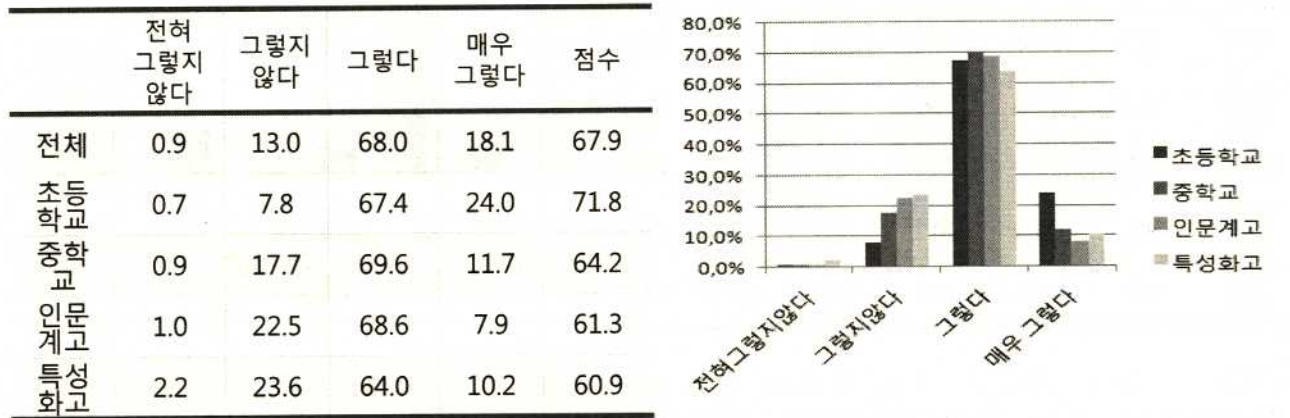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다’ 는 보호자도 47.1%에 이르렀으나 49.4%의 보호자는 ‘잘 모른다’ 고 답변하여 많은 보호자들이 관

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보호자의 경우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는 비율이 각각 51.4%, 3.7%로 나타나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

2-1) 선생님과 학교는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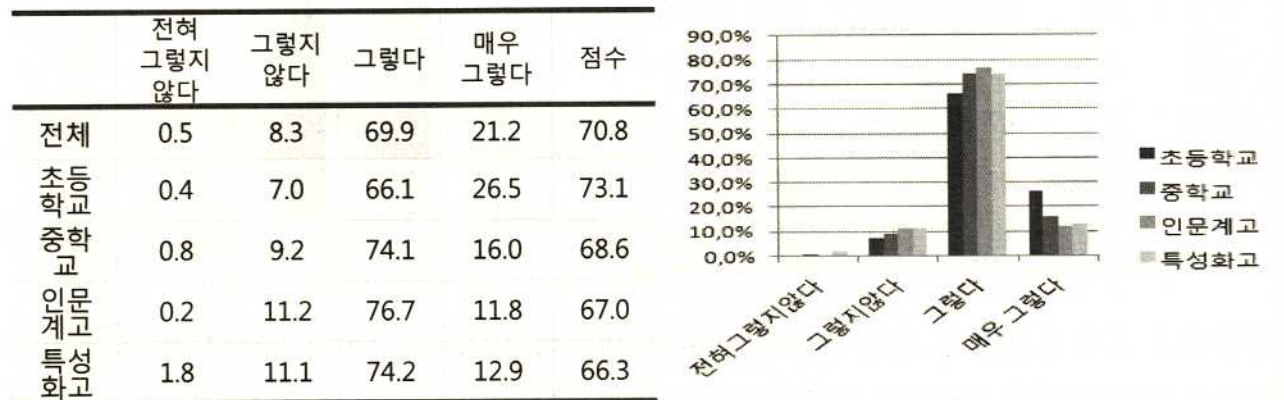
<표 II-56> 성적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보호자) (단위 %)



대다수의 보호자는 선생님과 학교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보호자의 24%는 ‘매우 그렇다’ 고 답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20% 이상의 고등학교 보호자는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보호자보다 더 학교가 성적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2-2) 선생님과 학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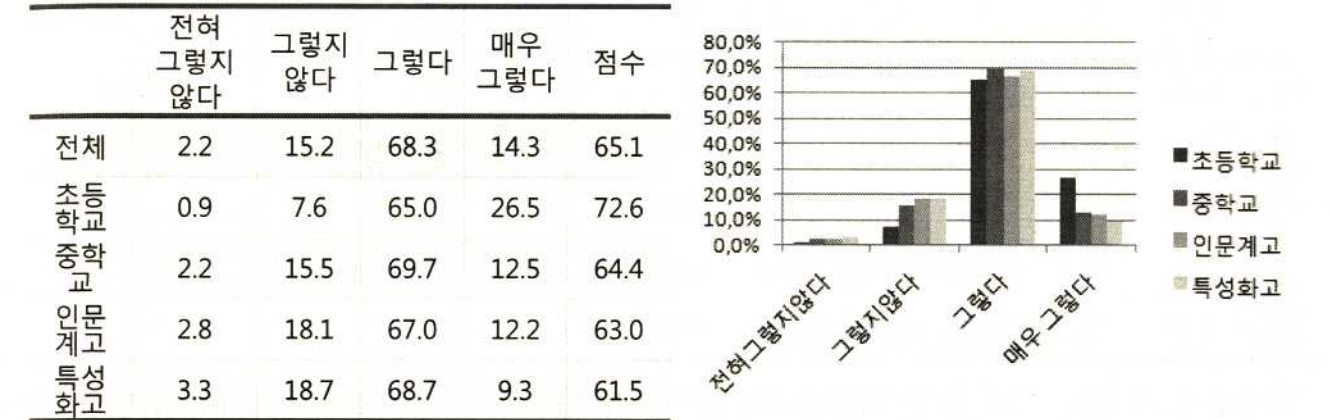
<표 II-57>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보호자) (단위 %)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보호자들은 성적에 따른 차별여부 설문과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성적에 따른 차별보다는 낮다고 보고 있다.

2-3) 방과 후 수업 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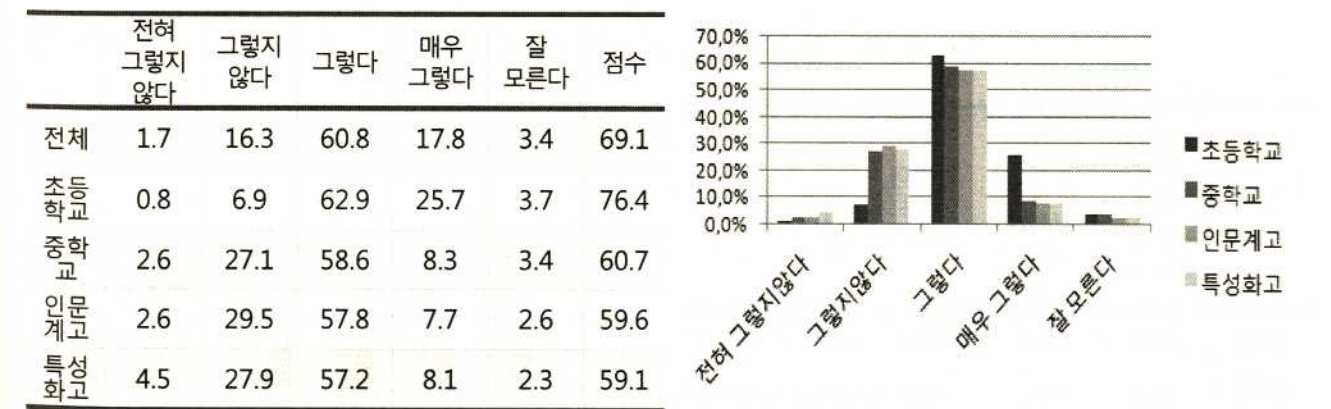
<표 II-58> 학습 선택권 보장여부(보호자) (단위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17.4%의 보호자가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는 답변을 하였고, 특히 고등학교 보호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부정적 답변 비율이 중학교 보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2-4) 학교는 학생에게 두발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한다.

<표 II-59>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여부(보호자) (단위 %)



학교가 학생에게 외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 보호자의 약 30%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보호자의 7.7%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88.6%가 긍정적

인 답변을 하여 보호자들 간 다소 편차가 나타난다.

2-5) 학교가 학생에게 각서, 반성문 등의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표 II-60> 각서 및 반성문 작성강요여부(보호자)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른다	점수
전체	26.6	55.2	16.5	0.9	0.9	72.5
초등학교	34.4	51.7	12.3	0.7	0.9	76.7
중학교	18.3	59.8	20.6	0.8	0.6	68.6
인문계고	15.6	60.5	22.3	1.0	0.6	66.8
특성화고	13.2	55.3	25.9	3.1	2.6	62.4

강제적인 반성문, 각서 작성여부에 대해 중학교와 인문계고 보호자들은 유사한 답변 양상을 보인다. 반면 초등학교 보호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는 답변이 34.4%, 51.7%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 특성화고 보호자의 경우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답변이 25.9%, 3.1%로 다른 학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3. 자녀의 생활에 대한 의견 등

3-1) 등교에 대한 자녀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떠하다고 느끼니까?

<표 II-61> 등교에 대한 자녀의 태도(보호자) (단위 %)

	힘들어 하고, 가끔 결석한다	가기 힘들어 하지만, 결석은 하지 않는다	힘들어 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점수
전체	28.9	46.1	18.2	6.7	34.2
초등학교	26.1	21.7	30.4	21.7	49.2
중학교	41.3	30.4	17.3	10.9	32.6
인문계고	48.7	31.1	14.6	5.7	25.7
특성화고	3.2	68.1	22.3	6.4	43.9

전체적으로 보호자의 75%는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기 힘들어 한다고 답변하였다. 초등학교 보호자의 30.4%, 21.7%가 '힘들어 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고 답하여 다른 학교 군에 비해 등교의 어려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반면 인문계고 보호자의 80% 이상이 자녀가 등교를 힘들어한다고 답변하여 인문계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3-2)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순으로 번호를 적어주시시오.

<표 II-62> 학교생활 장애요인(보호자) (단위 %)

	학습	교우 관계	교사와 관계	교외 활동	이성 관계
전체	28.5	21.3	18.0	18.5	13.8
초등학교	27.2	22.4	17.4	18.3	14.7
중학교	29.1	20.5	18.9	18.6	12.9
인문계고	31.4	18.9	17.9	19.1	12.7
특성화고	29.7	20.4	19.0	17.9	13.0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보호자는 성적이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입시 및 취업 스트레스와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더 두드러지며, 특성화고가 인문계고보다 낮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성적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 이어지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은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교외 활동, 이성 관계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3-3)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번호를 적어주시시오.

<표 II-63> 학교생활 중요요인(보호자) (단위 %)

	학습	교우 관계	건강	자기 개발	교사
전체	15.6	24.2	25.3	18.1	16.7
초등학교	13.3	24.9	25.7	17.7	18.4
중학교	18.1	23.6	25.0	18.2	15.1
인문계고	19.4	22.8	24.7	19.4	13.8
특성화고	18.3	23.2	24.2	20.3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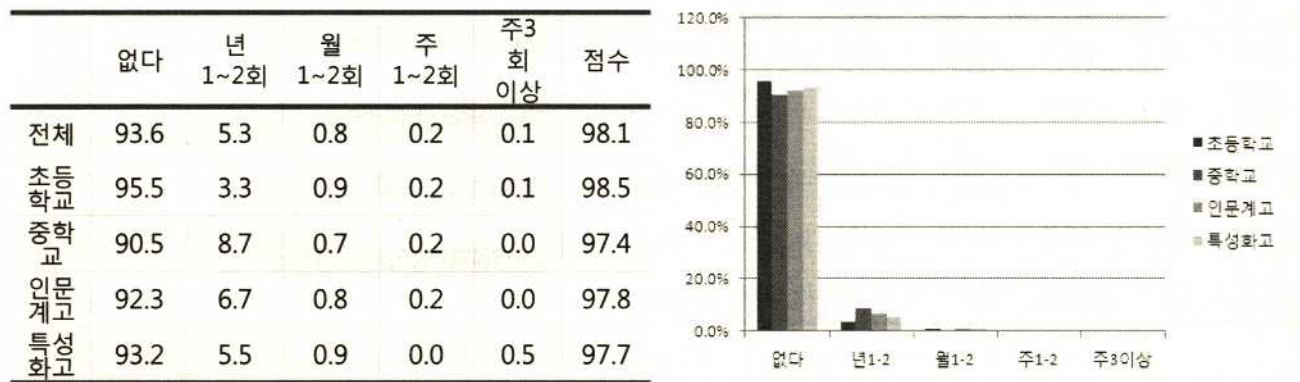
보호자가 생각하는 학교생활에서의 중요 요소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보호자들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건강 및 교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학습, 자기개발, 선생님과의 관계 등이 중요하다는 보호자들도 비슷한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3-4) 지난 한 학년 동안, 귀하의 자녀에게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들었습니까?

3-4-1) 학생 간 폭력(선배에 의한 단체 기합 포함)

<표 II-64> 학교폭력 피해 경험여부(보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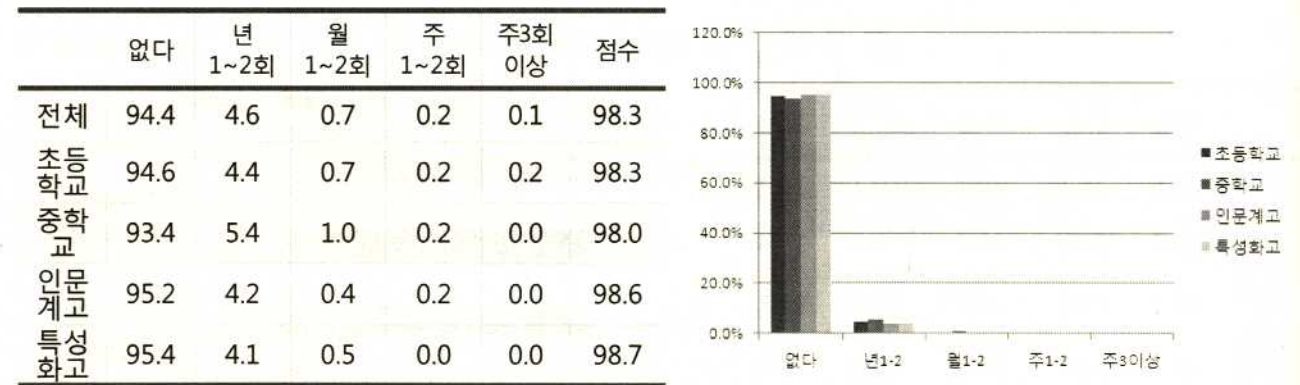


학생 간 폭력 존재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대다수의 보호자는 선배에 의한 단체 기합을 포함한 학생 간의 폭력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그 빈도가 일 년에 1-2회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3-4-2) 교내 집단따돌림

<표 II-65>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여부(보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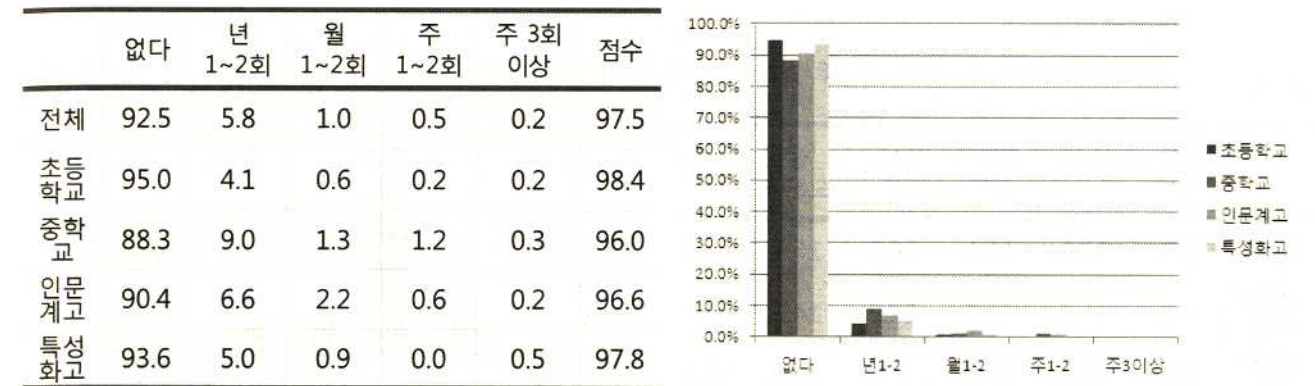


교내 집단 따돌림 존재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보호자 답변 양상은 학생 간 폭력 존재여부에 대한 답변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94.4%의 보호자가 교내 집단 따돌림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있다'고 한 경우에도 그 빈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3-4-3) 교사 체벌

<표 II-66> 교사 체벌 경험여부(보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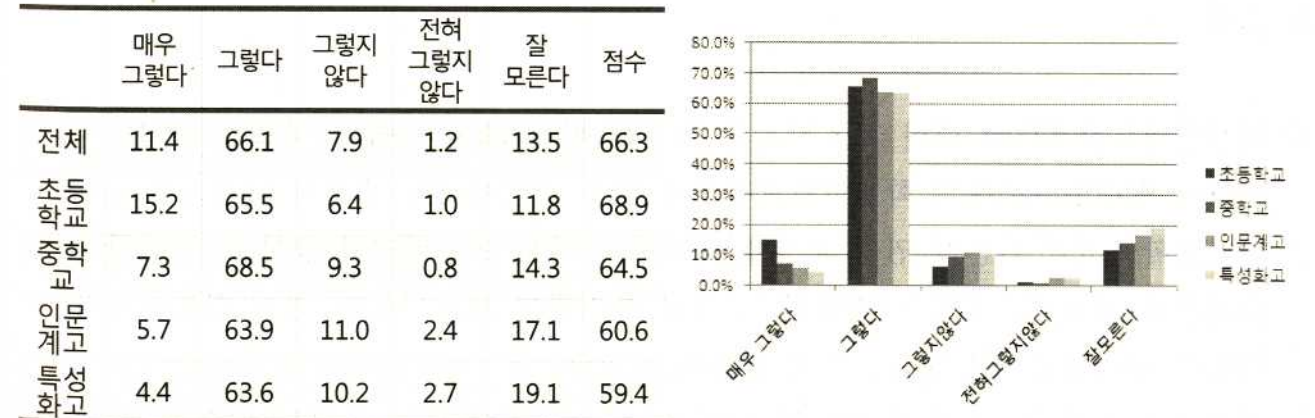
교사 체벌 존재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적으로 92.5%의 보호자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보호자의 경우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88.3%로 다른 학교 군 보호자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10% 미만의 선에서 일 년에 1-2회 빈도로 교사 체벌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4. 보호자의 학교 참여도

4-1) 학교는 중요 학교 정책의 결정에 있어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편이다.

<표 II-67> 학교 정책 결정 시 보호자 의견 반영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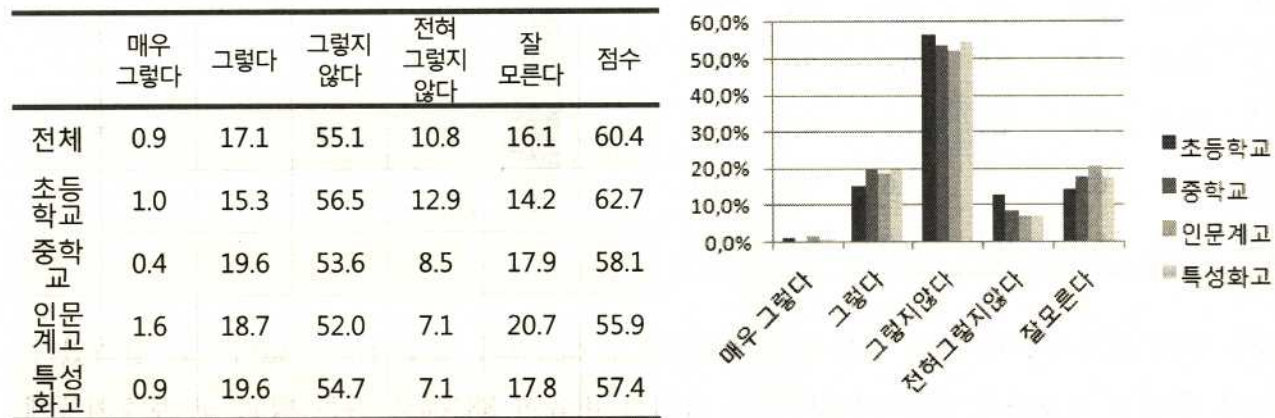
(단위 %)



학교정책에 대한 보호자 의견 반영에 대한 설문에서 다른 학교 군에 비해 초등학교 보호자의 15.2%가 '매우 그렇다', 65.5%가 '그렇다' 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보호자에 비해 고등학교 보호자의 경우 학교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호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4-2)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보호자의 참여가 높다.

<표 II-68> 학교 운영 내 보호자 참여정도 (단위 %)



실제 학교운영에 보호자들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답변비율은 학교정책에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 보호자의 16.3%만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는 응답을 한 반면 고등학교 보호자의 20%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초등학교 보호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한 비율도 다른 학교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 소결

-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은 평점 50점 안팎인 것으로 드러난 것에 비하여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긍정적 답변율이 높다.
- 2)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하여는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보호자들의 답변 간 격차가 확인된다. 특히 특성화고 보호자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자녀들의 권리보장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 3) 전체 보호자의 75%이상이 자녀가 학교에 가기 힘들어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중

학교, 인문계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경향이 강해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이상의 보호자가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않거나 가고 싶어한다고 답변하였는데, 학교규모나 교사 수 등 학교의 다른 환경적 요인과의 상관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 4) 학교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설문과 마찬가지로 그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체별 설문과 함께 학교 환경 등과 연동한 상관분석을 통해 강원도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5) 보호자의 학교 운영 등에의 참여율은 낮은 편인데,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은 학생, 보호자, 교사, 교육행정의 네 개의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는 형상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4절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1-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표 II-69>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교사) (단위 %)

	처음 들어본다	이름만 들어봤다	어떤 내용인지 안다	점수
전체	15.6	59.0	25.4	54.9
초등학교	11.4	58.9	29.6	59.1
중학교	18.4	57.9	23.7	52.6
인문계고	19.6	59.3	21.1	50.7
특성화고	20.5	63.6	15.9	47.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 전체의 15.6%가 ‘처음 들어본다’, 59%가 ‘이름만 들어봤다’고 답변해 강원도 내 교사들의 실질적인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정도는 다른 학교군에 비해 높은 편으로, ‘어떤 내용인지 안다’는 답변도 거의 30%에 이르렀다.

1-2)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표 II-70> 학생인권조례 인지여부(교사) (단위 %)

	처음 들어본다	이름만 들어봤다	어떤 내용인지 안다	점수
전체	0.6	29.7	69.6	84.5
초등학교	1.0	29.9	69.2	84.1
중학교	0.5	31.5	68.0	83.8
인문계고	0.4	27.7	71.9	85.8
특성화고	0.0	24.2	75.8	87.9

학생인권조례의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 전체의 69.6%가 ‘어떤 내용인지 안다’고 답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해 인식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교사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은 타 학교 군에 비해 낮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II-71> 학생인권조례 영향평가(교사)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점수
전체	6.4	65.3	17.1	3.6	7.6	64.8
초등학교	7.9	66.0	13.5	3.0	9.6	64.9
중학교	5.6	64.8	19.4	3.8	6.4	64.8
인문계고	4.7	63.3	21.5	4.0	6.5	63.9
특성화고	3.8	67.9	19.8	5.3	3.1	66.0

교사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 ‘매우 그렇다’ 6.4%, ‘그렇다’ 65.3%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전체적으로 17.1%나 되며 특히 인문계고 교사들은 다른 학교 군 교사들에 비해 회의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다.

1-4) 우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표 II-72> 헌법 및 교육기본법 내 인권보장조항 인지여부(교사) (단위 %)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점수
전체	9.3	65.4	25.2	0.5	61.5
초등학교	10.5	68.9	20.6	0.2	63.4
중학교	8.8	62.9	28.3	0.6	60.3
인문계고	7.0	63.4	29.7	0.7	59.2
특성화고	9.2	60.0	30.8	1.5	59.6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혹은 ‘알고 있다’고 답변한 교사의 비율은 각각 9.3%, 65.4%로 나타났으나, ‘잘 모른다’고 한 교사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25.2%로 낮지 않은 편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타 학교 군의 교사들에 비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에 있는 학생인권보장조항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2-1) 선생님과 학교는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표 II-73> 성적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교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전체	0.0	2.6	51.2	46.2	81.4
초등학교	0.0	1.3	42.8	55.8	85.0
중학교	0.0	3.7	57.2	39.1	78.7
인문계고	0.0	3.6	61.1	35.3	77.4
특성화고	0.0	3.0	55.3	41.7	79.7

성적에 따른 차별 여부 설문에서 교사의 대다수는 선생님과 학교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55.8%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여 타 학교 군의 교사들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2-2) 선생님과 학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표 II-74>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교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전체	0.1	0.9	41.2	57.8	85.7
초등학교	0.1	0.6	31.1	68.2	89.2
중학교	0.2	1.3	47.6	51.0	83.3
인문계고	0.0	0.4	55.3	44.4	81.5
특성화고	0.0	1.5	45.5	53.0	84.0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성적에 따른 차별여부 설문과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57.8%, ‘그렇다’는 답변이 41.2%로 성적에 따른 차별보다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이 덜하다고 보고 있다.

2-3)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 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표 II-75> 학습 선택권 보장여부(교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전체	1.8	10.7	53.4	34.1	73.4
중학교	1.8	12.6	55.5	30.2	71.5
인문계고	1.5	9.1	53.8	35.6	74.7
특성화고	3.8	9.9	49.6	36.6	73.2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12.5%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2-4) 우리 학교는 두발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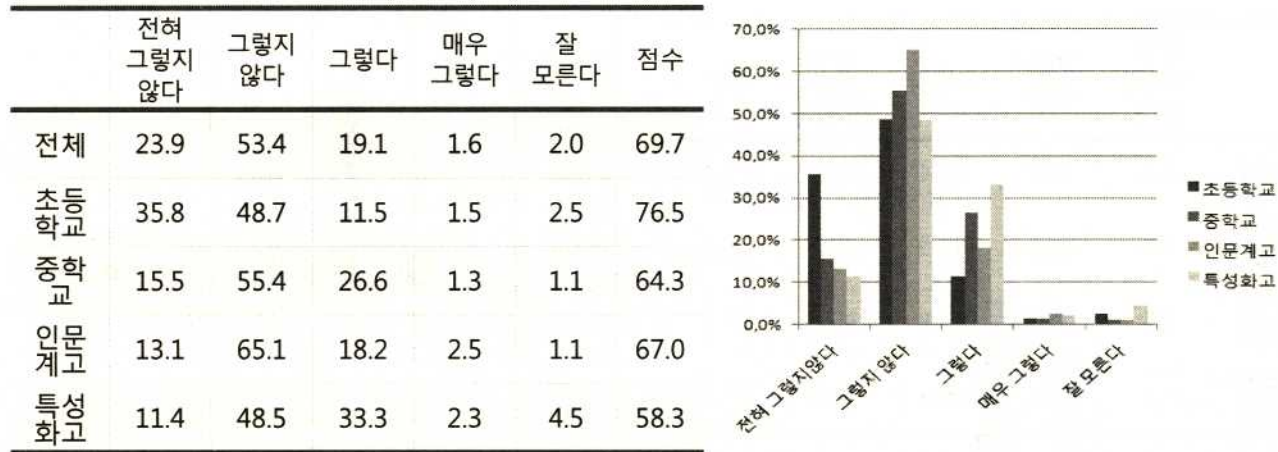
<표 II-76>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여부(교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른다	점수
전체	0.5	15.0	41.4	42.5	0.6	77.6
초등학교	0.2	1.1	25.3	72.5	0.8	92.2
중학교	1.1	27.6	52.1	18.8	0.5	64.9
인문계고	0.0	24.4	56.7	18.5	0.4	67.4
특성화고	0.8	22.7	59.8	16.7	0.0	67.2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그렇다’ 41.4%, ‘매우 그렇다’ 42.5%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72.5%로 타 학교 군의 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답변 비율을 보였다.

2-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각서, 반성문 등의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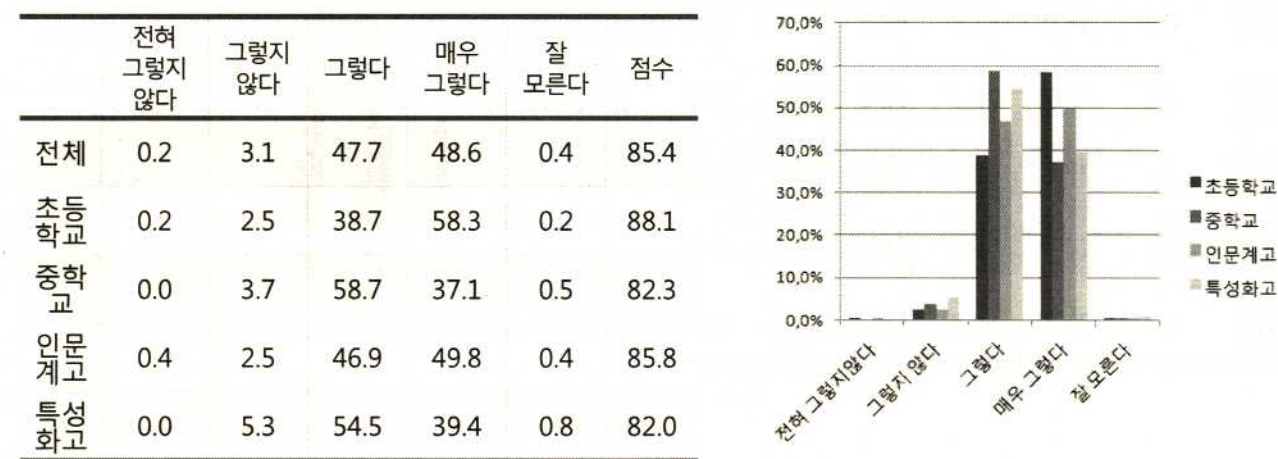
<표 II-77> 각서 및 반성문 작성강요여부(교사) (단위 %)



강제적인 반성문, 각서 작성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와 인문계고 교사에 비해 중학교와 특성화고 교사들 사이에서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교사 전체의 35.8%, 48.7%는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군에 비해 반성문이나 각서 작성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6) 우리 학교는 학급회의, 학생회(학생대표회) 등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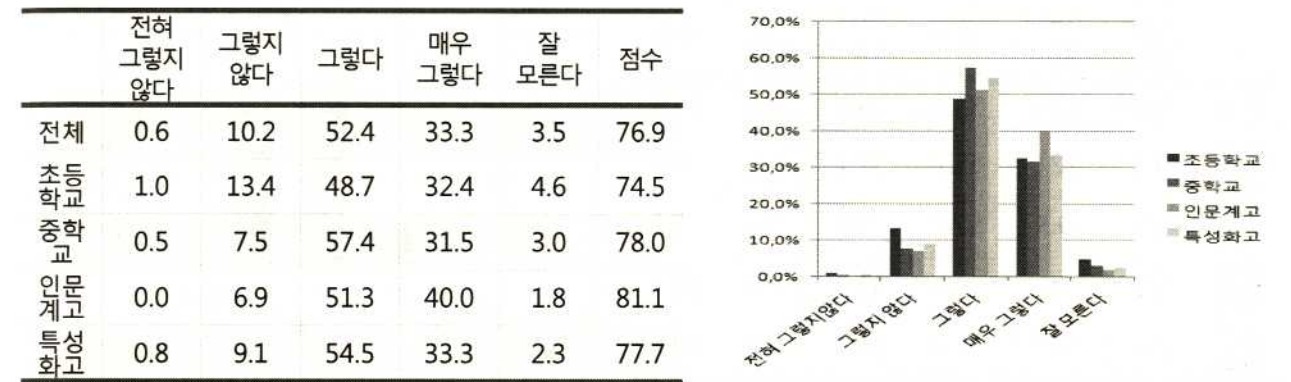
<표 II-78> 정기 학급회의 및 학생회여부(교사) (단위 %)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 운영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 대다수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학급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특성화고 교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5.3%로 다른 학교 군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2-7)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 및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학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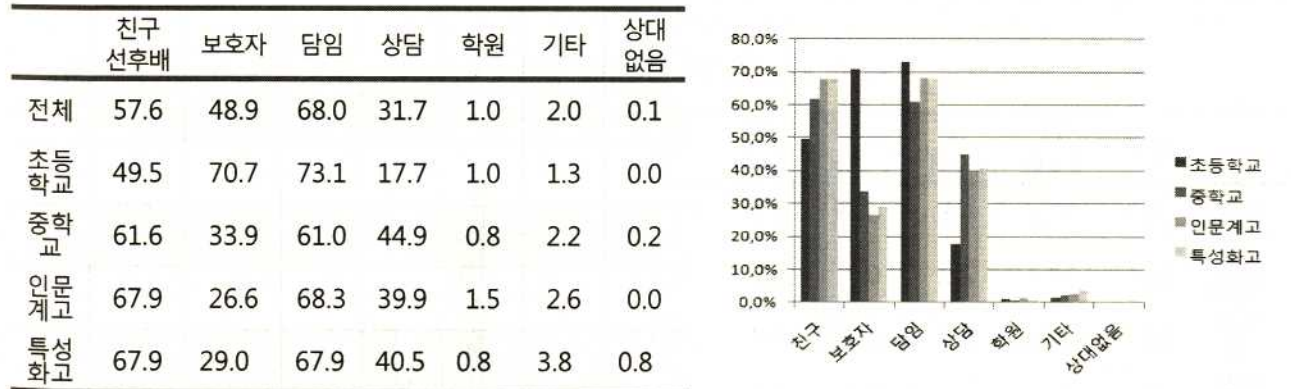
<표 II-79> 학생 의견 반영여부(교사) (단위 %)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학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인문계고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13.4%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들이 학교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8) 귀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누구와 주로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표 II-80> 고민 상담 대상(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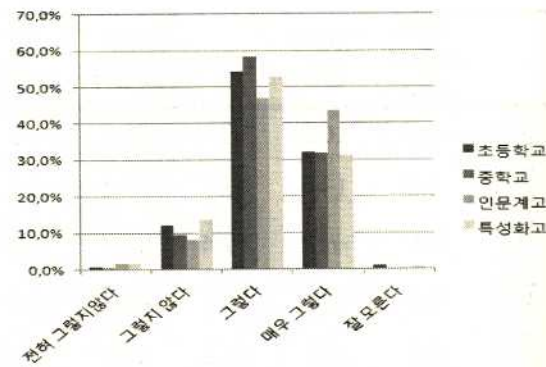
학생들의 고민 상담 대상에 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서로 보호자나 담임교사보다는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 초등학생의 70.7%가

‘보호자’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반면 이 비율은 중·고등학생에 와서는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다는 답변 비율도 10% 이상 있었으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상대 없음’이 0.1%로 학생과 교사 간 답변 양상에 차이가 있다.

2-9)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81> 자율적 동아리 활동여부(교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른다	점수
전체	0.8	10.7	54.4	33.6	0.5	77.3
초등학교	0.6	12.0	54.2	32.1	1.1	76.3
중학교	0.5	9.5	58.3	31.8	0.0	77.8
인문계고	1.5	8.1	46.9	43.5	0.0	80.7
특성화고	1.5	13.7	52.7	31.3	0.8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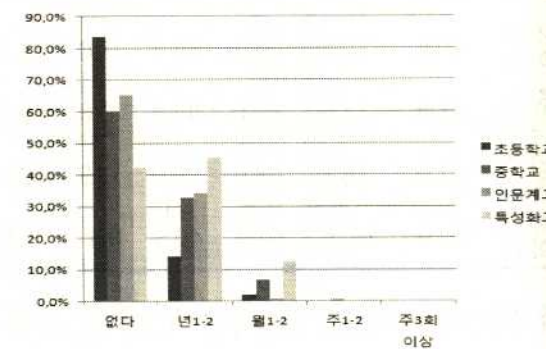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인문계고 교사의 46.9%, 43.5%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교와 특성화고 교사들은 중학교와 인문계고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경우가 많다.

2-10) 귀 학교에서 지난 한 학년 동안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2-10-1) 학생 간 폭력(선배에 의한 단체 기합 포함)

<표 II-82> 학교폭력 피해 경험여부(교사)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3회 이상	점수
전체	70.1	25.4	4.1	0.3	0.1	91.3
초등학교	83.5	14.2	2.0	0.2	0.0	95.3
중학교	59.8	32.6	6.7	0.7	0.2	87.8
인문계고	65.1	34.1	0.8	0.0	0.0	91.1
특성화고	42.1	45.5	12.4	0.0	0.0	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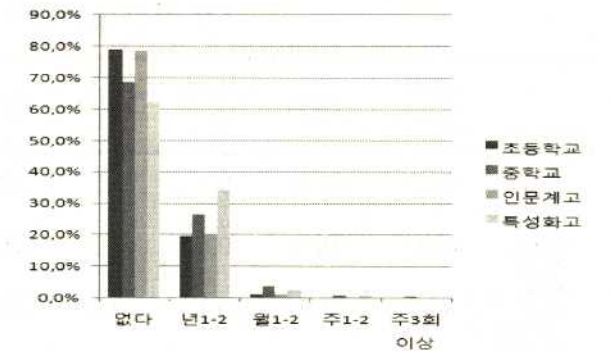


학생 간 폭력에 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83.5%가 ‘없다’고 답변하여 타 학교 군에 비해 학교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 특성화고의 경우 ‘년 1-2회’ 45.5%, 월 1-2회 12.4%로 타 학교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은 폭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학생 간 폭력에 대한 교사의 답변은 대다수가 학교폭력의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학생과 보호자의 답변 양상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2-10-2) 교내 집단따돌림

<표 II-83>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여부(교사)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3회 이상	점수
전체	74.3	23.0	2.2	0.4	0.2	92.7
초등학교	78.9	19.8	1.2	0.1	0.0	94.4
중학교	68.4	26.3	3.9	0.8	0.5	90.3
인문계고	78.6	20.2	1.2	0.0	0.0	94.3
특성화고	62.5	34.2	2.5	0.8	0.0	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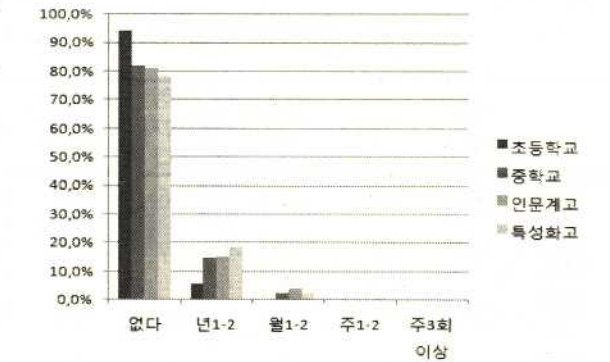


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의 74.3%가 ‘없다’고 답변하여 학생 간 폭력에 대한 설문과 유사한 답변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없다’는 답변비율이 높아졌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반대로 그 비율이 낮아진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19.8%가 ‘년 1-2회’ 집단따돌림이 있다고 답변하여 교내 폭력문제보다 집단따돌림의 발생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10-3) 교사 체벌

<표 II-84> 교사 체벌 경험여부(교사)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3회 이상	점수
전체	87.1	10.7	1.8	0.2	0.2	96.1
초등학교	94.1	5.6	0.4	0.0	0.0	98.4
중학교	82.0	14.5	2.6	0.5	0.5	94.2
인문계고	81.0	15.1	4.0	0.0	0.0	94.2
특성화고	78.3	18.3	2.5	0.8	0.0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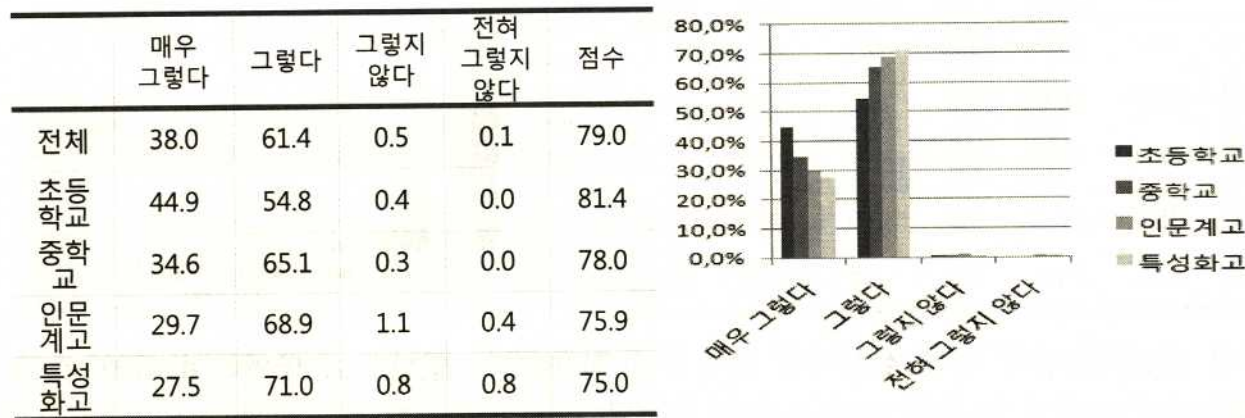
교사의 체벌여부에 대하여 전체 교사의 87.1%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체벌이 있다

고 답변한 경우에도 그 빈도에 있어서는 '년 1-2회' 정도로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타 학교 군에 비해 교사의 체벌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성화고 교사의 78.3%만이 체벌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18.3%가 '년 1-2회' 체벌이 있다고 답변하여 초·중학교나 인문계고에 비해 교사의 체벌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3. 교사의 학교생활

3-1)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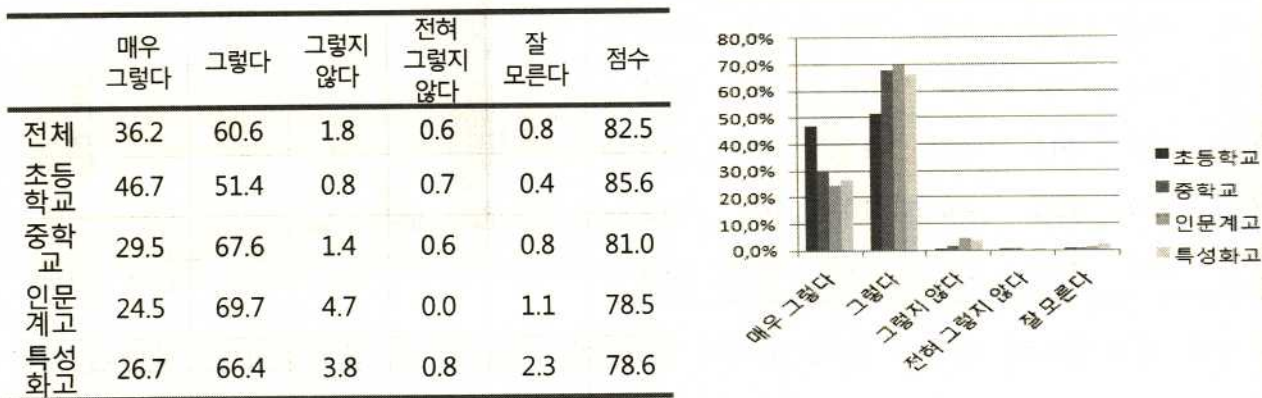
<표 II-85> 교사의 학생의견 경청 정도(교사) (단위 %)



전체 교사의 99.4%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학생 의견 경청 여부에 대한 교사의 답변은 약 15% 정도가 '선생님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고 했던 학생들의 답변양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2)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

<표 II-86> 교사의 학생행복 관심 정도(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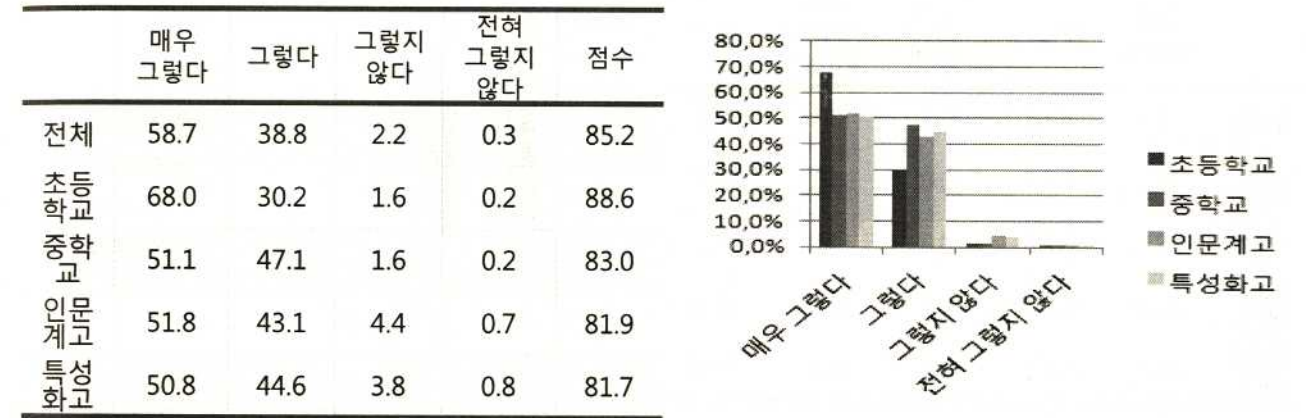


전체 교사의 96.8%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매우 그렇다' 는 긍정적인 답변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나 '모른다' 는 답변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 다음은 학교장과 교사의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을 묻습니다.

3-3-1)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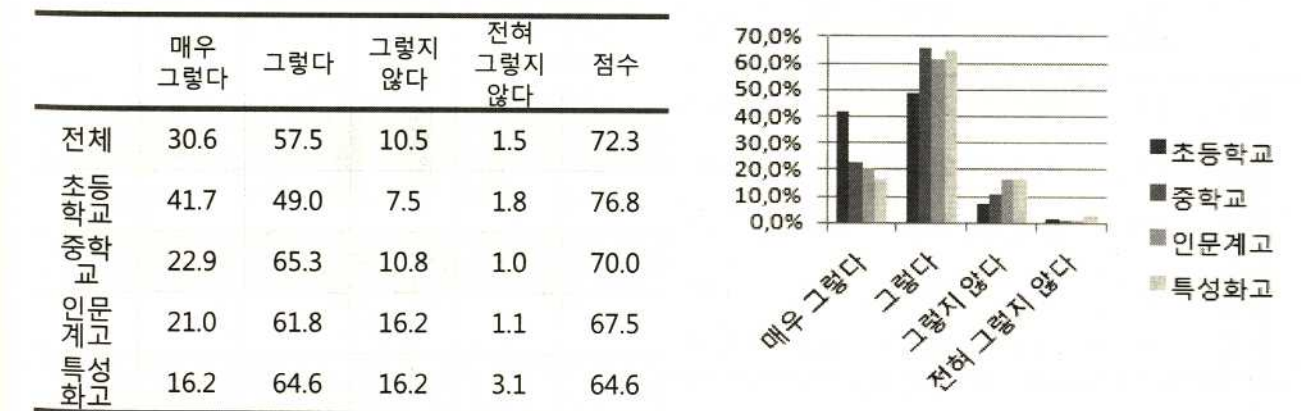
<표 II-87> 교사 의견 반영 필요도(교사) (단위 %)



교사들의 97.5%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68%가 '매우 그렇다' 고 답변하여 타 학교 군에 비해 학교장의 교사의견 경청 및 반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3-3-2)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한다.

<표 II-88> 교사 의견 반영 정도(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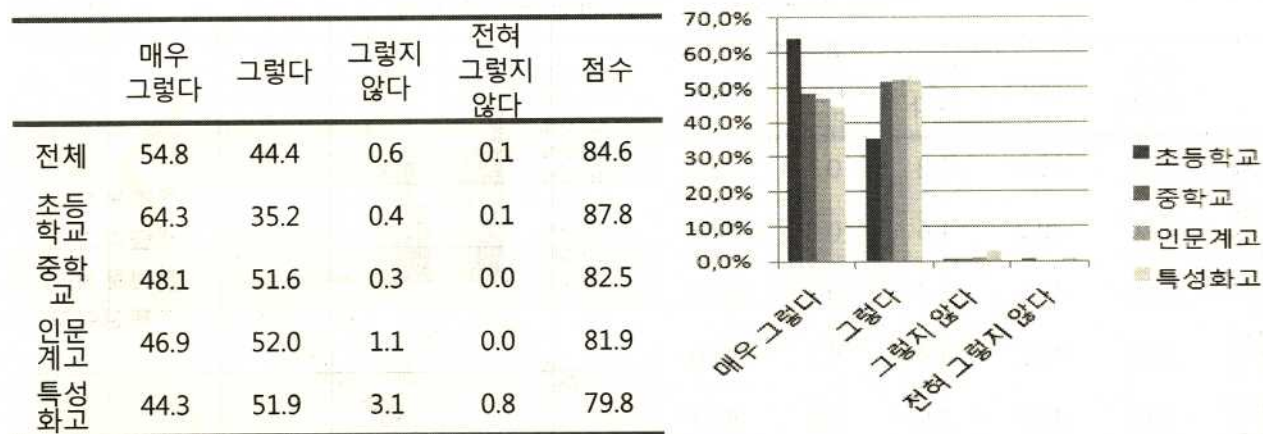


교사들의 88.1%는 학교장이 실제로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12%의 교사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특히 초·중학교 교사보다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3-4) 다음은 교사의 학생인권에서의 주체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을 묻습니다.

3-4-1) 교사는 학생인권 실현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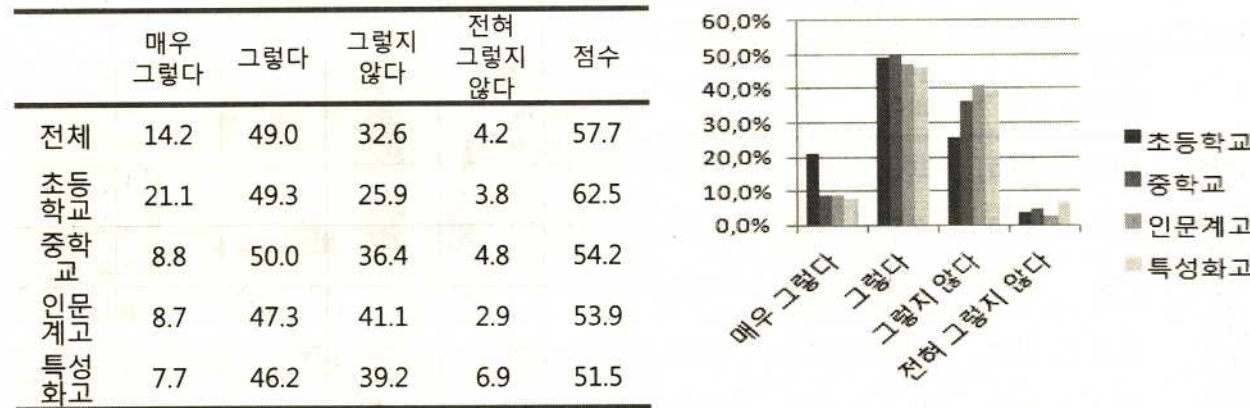
<표 II-89> 학생인권주체로서의 교사 인정 필요도(교사) (단위 %)



교사의 99.2%는 교사가 학생인권 실현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64.3%는 '매우 그렇다', 35.2%는 '그렇다'고 답변하여 학생인권에서의 교사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4-2) 실제로 교사는 학생인권 증진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고 있다.

<표 II-90> 학생인권주체로서의 교사 인정 정도(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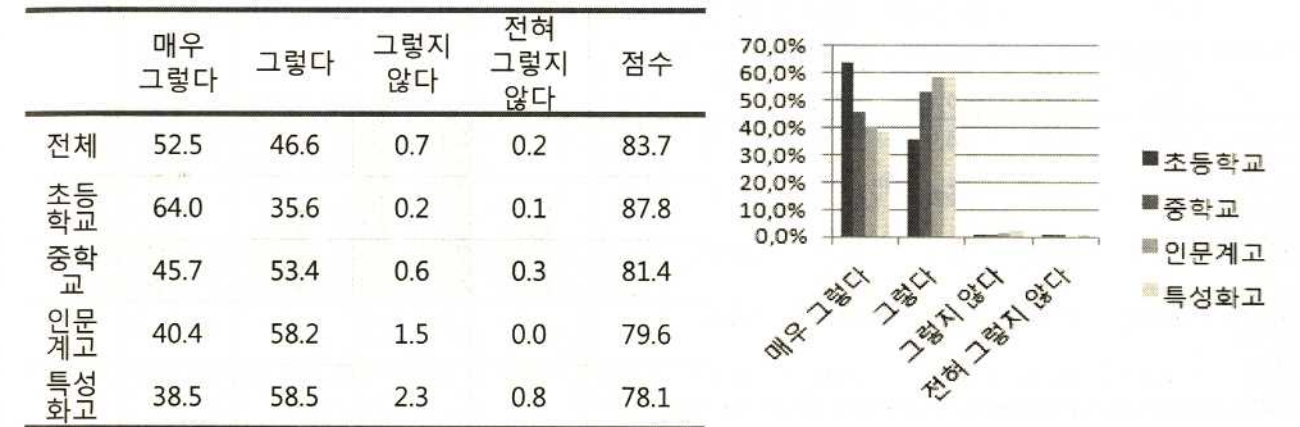


실제로 교사가 학생인권 증진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의 63.2%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실제로 교사가 학생인권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인문계고>특성화고의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3-5) 다음은 학교운영의 교사 참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3-5-1) 학교운영에 있어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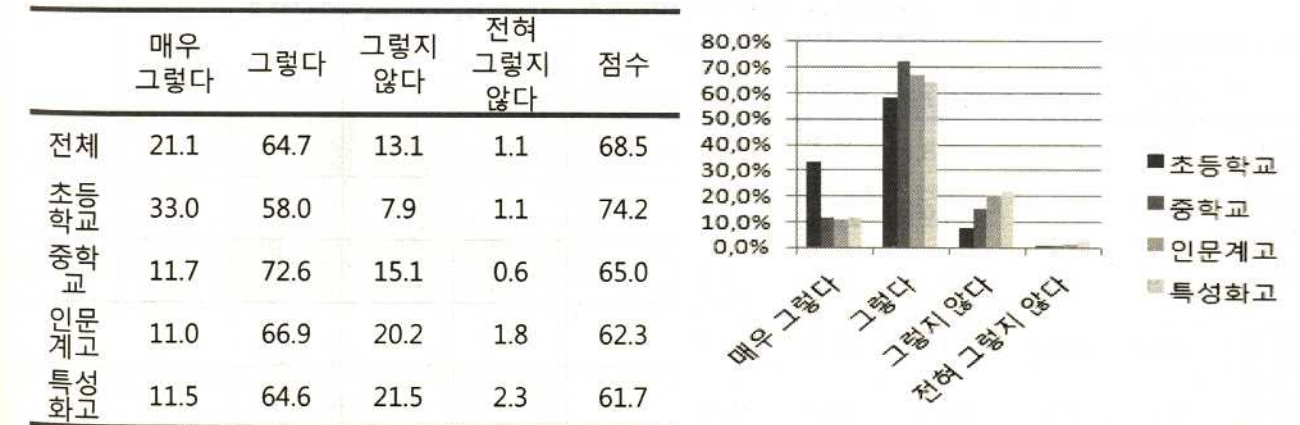
<표 II-91> 교사 참여 보장 필요도(교사) (단위 %)



학교운영 과정에서의 교사참여 필요성에 대해 99.1%의 교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순서로 교사가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3-5-2) 실제로 학교운영에 있어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표 II-92> 교사 참여 보장 정도(교사) (단위 %)



교사의 대부분이 학교 운영에 교사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로 학교 운영에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의 14.2%는 '그렇지 않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교사의 순서로 학교 운영에 있어 교사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4. 교육활동의 어려움 요소

4-1) 과도한 행정업무

<표 II-93> 과도한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15.2	32.1	34.9	17.8	51.7
초등학교	16.5	30.7	35.6	17.2	51.2
중학교	16.3	34.3	33.5	15.9	49.7
인문계고	12.8	30.8	35.5	20.9	54.8
특성화고	7.6	33.3	35.6	23.5	58.3

많은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특성화고 교사들의 23.5%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 역시 타 학교 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행정업무로 인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교육행정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표 II-94> 교육행정의 현장 이해 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16.8	27.1	34.8	21.4	53.6
초등학교	18.4	26.4	34.9	20.2	52.4
중학교	16.9	27.7	34.9	20.6	53.1
인문계고	15.0	24.9	34.8	25.3	56.8
특성화고	9.8	32.6	33.3	24.2	57.3

교사들의 83.3%가 교육행정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교육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20%보다 낮았고,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4-3) 교장 및 상급자 교육마인드 부족

<표 II-95> 학교장 및 상급자의 교육마인드 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56.5	25.3	15.2	3.1	21.6
초등학교	62.2	21.2	14.5	2.1	18.8
중학교	55.3	26.8	15.0	2.9	21.8
인문계고	48.9	28.8	16.1	6.2	26.5
특성화고	42.0	35.9	18.3	3.8	27.9

교장 및 상급자의 교육마인드 부족이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 전체의 56.5%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중학교>인문계고>특성화고의 순서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4) 교사와 학생간 유대관계(소통) 부족

<표 II-96> 교사와 학생간 소통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58.8	31.4	8.5	1.4	17.4
초등학교	67.2	24.8	7.0	1.1	13.9
중학교	52.8	36.2	9.2	1.8	19.9
인문계고	54.2	36.5	9.2	0.0	18.2
특성화고	43.5	38.9	13.7	3.8	25.9

전체 교사의 41.3%가 교사와 학생 간 유대관계(소통)의 부족이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답변하였다. 특성화고 교사들이 타 학교 군의 교사들에 비해서 학생과의 소통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초등학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4-5) 교사별 수업시간 과다

<표 II-97> 과다한 수업시간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44.2	30.9	17.6	7.3	29.3
초등학교	42.8	34.2	16.2	6.8	29.0
중학교	50.4	23.7	17.7	8.2	27.9
인문계고	38.2	34.2	21.3	6.3	31.8
특성화고	36.4	37.1	18.2	8.3	32.8

과다한 수업시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55.8%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초·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시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4-6) 교육 예산의 부족

<표 II-98> 교육예산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32.7	35.1	23.7	8.5	35.9
초등학교	33.5	34.6	23.8	8.0	35.4
중학교	34.5	34.0	21.9	9.5	35.4
인문계고	29.0	39.0	25.0	7.0	36.6
특성화고	26.7	35.1	28.2	9.9	40.4

전체 교사의 67.3%가 교육 예산의 부족이 교육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초·중학교 교사보다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서 교육 예산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4-7) 보호자의 지나친 간섭

<표 II-99> 보호자의 과도한 간섭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69.3	26.5	2.6	0.4	10.9
초등학교	73.9	22.4	3.4	0.3	10.0
중학교	71.2	26.8	1.8	0.2	10.2
인문계고	65.1	31.5	2.8	0.6	12.8
특성화고	67.8	28.9	2.6	0.7	12.0

보호자의 지나친 간섭이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69.3%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그 비율은 초등학교>중학교>특성화고>인문계고의 순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인문계고 교사들이 보호자들의 간섭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그런 편이다'나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기타 선택지보다 낮았다.

4-8) 학생에 대한 가정의 지지 부족

<표 II-100> 가정 내 학생 지지 부족과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70.2	25.2	3.0	0.4	10.8
초등학교	74.1	22.7	2.6	0.5	9.8
중학교	73.4	23.9	2.5	0.2	9.8
인문계고	66.0	29.6	3.7	0.7	13.0
특성화고	65.2	29.7	4.8	0.4	13.3

학생에 대한 가정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교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8.6%에 이르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인문계고나 특성화고 교사들의 답변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4-9) 학생의 수업방해

<표 II-101> 학생 수업 방해 여부와 교육활동 상관관계(교사) (단위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중
전체	51.8	38.0	8.0	1.0	18.9
초등학교	66.6	28.1	4.3	1.0	13.1
중학교	52.6	38.5	8.0	0.9	19.0
인문계고	40.7	46.7	11.5	1.1	24.2
특성화고	36.4	50.0	12.1	1.5	26.1

특성화고>인문계고>중학교>초등학교의 순으로 학생의 수업방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사의 66.6%가 위 설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특성화고에서는 36.4%의 교사만이 같은 답변을 하였다.

5. 교권의 의미 및 학생 지도 방법

5-1) 다음 중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표 II-102> 교권 인식(교사) (단위 %)

	학생	행정당국	법제도	통제력	기타
전체	57.4	12.5	22.3	6.6	1.2
초등학교	55.8	14.7	23.6	5.0	0.9
중학교	55.7	12.4	22.1	8.3	1.5
인문계고	64.4	8.5	19.6	6.3	1.1
특성화고	60.3	7.1	20.6	9.5	2.4

교사들의 57.4%가 학생들로부터 부여된 존경과 권위를 ‘교권’으로 선택하였다.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교사들이 초·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교권’을 학생과의 관계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교권’이 법과 같은 제도 혹은 교육행정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22.3%에 이르렀고, 학생지도를 위한 통제나 강제를 ‘교권’으로 보는 교사의 비율도 6.6%로 나타났다.

5-2) 학생의 행동이 수업에 방해될 경우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표 II-103> 교사 처벌 유형(교사) (단위 %)

	그냥 떠나다	복도	회초리	벌점	손들기	상담실	주의	기타
전체	0.6	15.6	0.7	8.4	1.0	6.7	65.8	1.3
초등학교	0.6	9.4	0.7	7.8	1.3	6.7	71.9	1.5
중학교	0.5	20.3	0.6	10.0	0.6	6.9	59.5	1.6
인문계고	0.7	20.1	1.1	7.7	1.1	5.9	63.0	0.4
특성화고	0.8	22.1	0.0	5.3	0.8	6.9	63.4	0.8

교사들의 대부분은 학생의 행동이 수업에 방해가 될 경우 말로 주의를 줌으로써 해결한다고 답변하였다. 초등학교>특성화고>인문계고>중학교의 순으로 주의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답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5.6%의 교사는 ‘교실 뒤나 복도로 나가서 있게 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벌점을 준다’와 ‘상담실에서 상담한다’는 비율도 8.4%, 6.7%로 나타난다. 한편 방치 및 격리의 답변율이 16.2%라는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담당 학생 수가 많은 현재의 학교 현실에서 상담교사 및 보조교사의 확충 및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생지도 방안의 폭을 넓히는 제도적 상상력의 확장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6. 학생인권사례에 대한 생각

6-1)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표 II-104> 학생 결정능력 신뢰여부(교사)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2.3	39.5	48.7	8.1	1.4
초등학교	2.6	38.4	48.0	9.6	1.5
중학교	1.8	41.8	49.3	5.7	1.4
인문계고	1.4	37.7	50.2	9.3	1.4
특성화고	4.0	40.6	47.5	6.9	1.0

교사들의 41.8%는 학생들이 아직 어려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중학교와 특성화고 교사들이 초등학교·인문계고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6-2) 학생들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표 II-105> 학생 사회문제 참여여부(교사)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6.8	68.3	12.3	2.3	0.4
초등학교	20.8	65.5	10.3	3.0	0.4
중학교	12.8	72.8	12.3	1.6	0.5
인문계고	15.8	64.8	17.6	1.1	0.7
특성화고	12.9	71.2	12.9	3.0	0.0

교사들의 85.1%는 학생들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한 비율도 15% 정도로 나타난다.

6-3) 학교문제 해결에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필요하다.

<표 II-106> 학교문제 해결 과정 내 학생참여여부(교사)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22.5	74.2	2.6	0.4	0.4
초등학교	26.9	70.6	1.8	0.2	0.4
중학교	17.9	78.1	3.4	0.5	0.2
인문계고	20.5	75.8	2.2	0.7	0.7
특성화고	20.5	74.2	4.5	0.0	0.8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교사의 96.7%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고 답변하여 대다수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4) 학급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다.

<표 II-107> 남녀학생 번호배정과 차별(교사)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9.8	38.0	25.3	11.5	5.5
초등학교	21.0	34.9	26.6	11.2	6.3
중학교	21.0	41.1	23.4	11.1	3.4
인문계고	13.9	39.2	26.4	12.5	8.1
특성화고	18.2	40.2	24.2	12.9	4.5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답변한 교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57.8%에 이른다. 그러나 각각 25.3%, 11.5%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교사도 있음을 알 수 있다.

6-5)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일기장 검사는 교육상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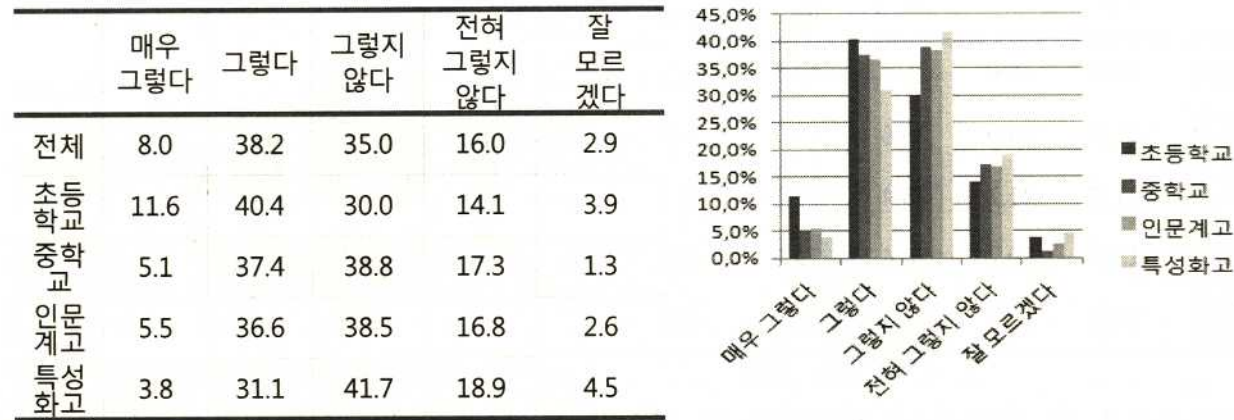
<표 II-108> 초등학교 학생 일기검사와 차별(교사)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2	53.4	21.8	7.3	4.3
초등학교	22.1	53.6	15.3	5.3	3.6
중학교	6.8	53.5	27.3	8.2	4.2
인문계고	4.8	54.9	26.0	9.2	5.1
특성화고	4.6	48.1	28.2	11.5	7.6

초등학교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적으로 66.6%로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22.1%가 '매우 그렇다' 고 답변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들 보다 일기장 검사의 필요성을 훨씬 많이 느끼고 있다.

6-6) 교사가 학생을 이름이 아닌 번호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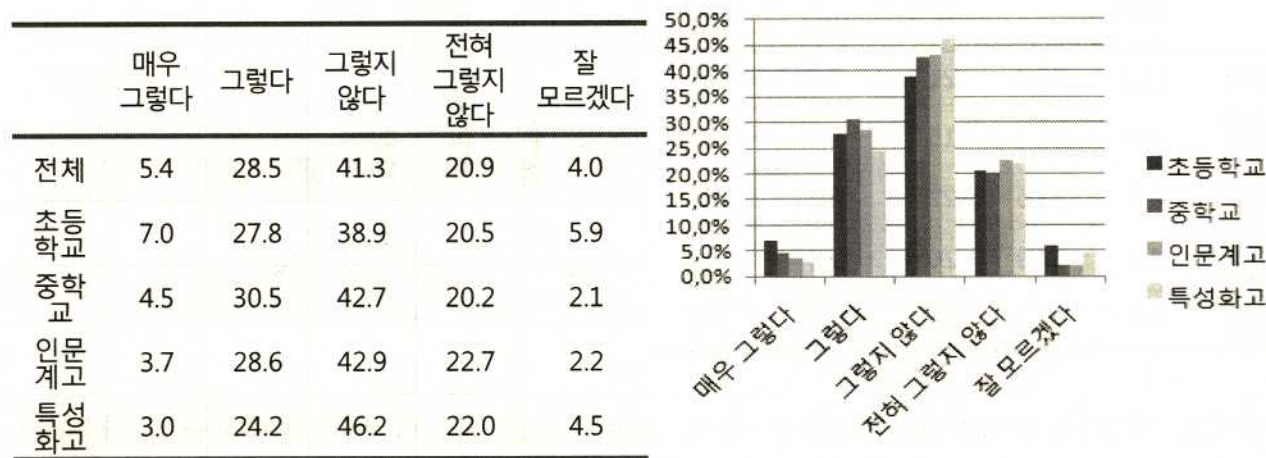
<표 II-109> 학생 번호 호칭과 인격권 침해(교사) (단위 %)



교사의 46.2%가 학생을 이름이 아닌 번호로 호칭하는 것을 학생인격권 침해의 요소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인문계고>중학교>특성화고의 순으로 학생을 번호 등으로 호칭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6-7) 학생 교복에 명찰을 고정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표 II-110> 학생 명찰 부착과 인격권 침해(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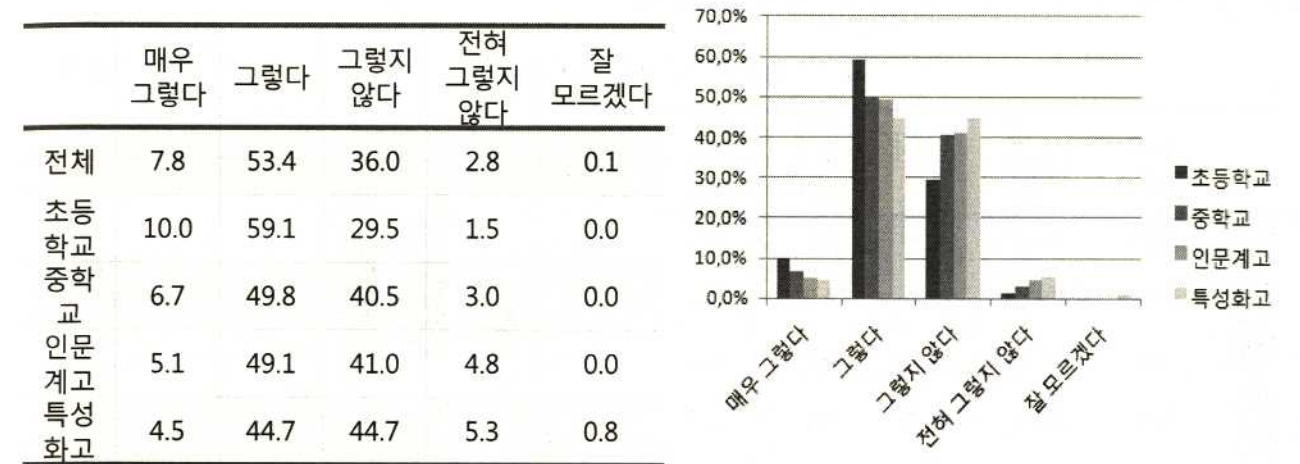


교복에 명찰을 다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교사는 전체의 33.9%로 나타난다.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명찰을 고정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7. 교사의 직무피로도(MBI)

7-1) 나는 학생에 관련된 사항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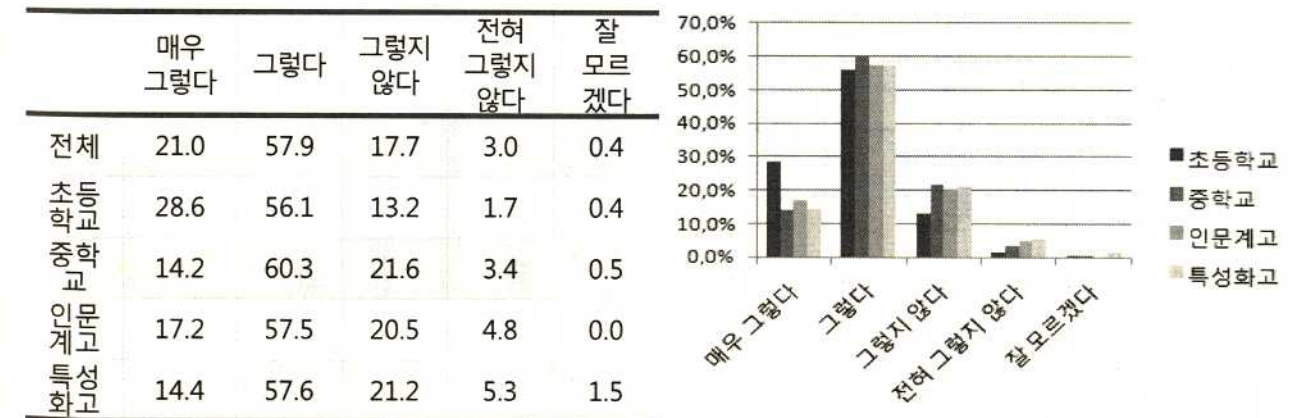
<표 II-111> 직무 역량 평가(교사) (단위 %)



교사들의 61.2%는 자신이 학생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긍정적 답변비율은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특성화고 교사의 44.7%는 '그렇지 않다', 5.3%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타 학교 군에 비해 부정적 답변비율이 높았다.

7-2)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 II-112> 직업 성취도(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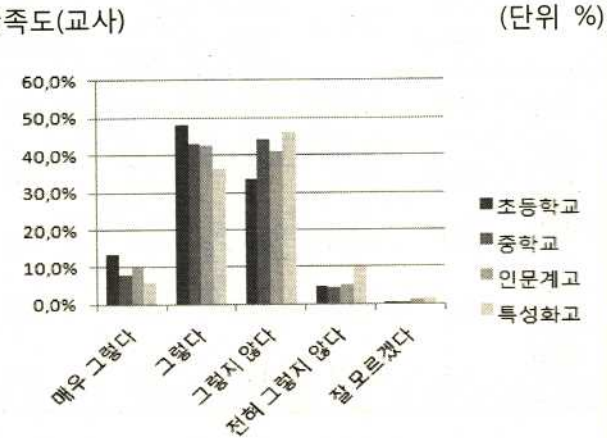


직업성취도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의 78.9%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답변비율도 20%를 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직업적인 성취감과 만족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3)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표 II-113> 직무 만족도(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5	44.8	39.0	5.1	0.5
초등학교	13.4	48.2	33.4	4.7	0.2
중학교	7.8	43.2	44.0	4.6	0.3
인문계고	9.9	42.5	41.0	5.1	1.5
특성화고	6.1	36.4	46.2	9.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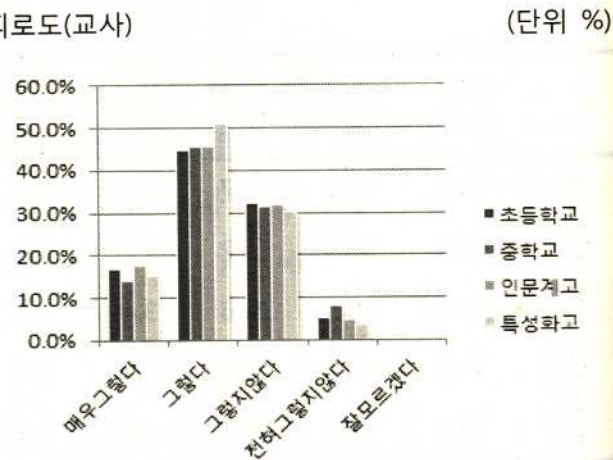


교사들의 55.3%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답변을 하였다. 초등학교·인문계고 교사들이 중학교·특성화고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성화고 교사의 46.2%, 9.8%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직무피로도도 높은 경향이 있다.

7-4)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지쳐 있다.

<표 II-114> 일과 피로도(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6.1	45.6	31.9	6.0	0.3
초등학교	17.1	44.7	32.4	5.2	0.5
중학교	14.2	45.6	31.7	8.2	0.3
인문계고	17.6	45.8	31.9	4.8	0.0
특성화고	15.2	50.8	30.3	3.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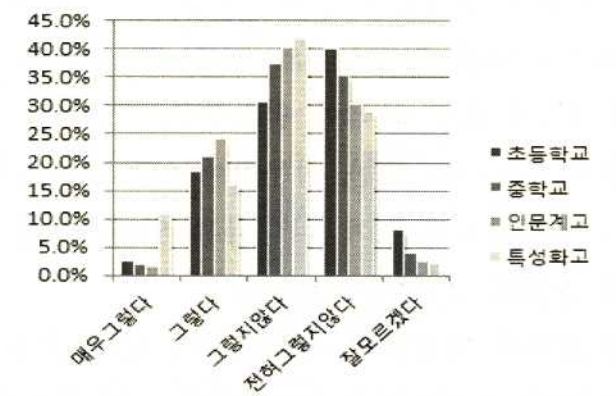
교사들의 61.7%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지쳐있다고 답변하였고 특성화고>인문계고>중학교>초등학교의 순으로 일과에서의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7-5)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표 II-115> 대인관계에서의 무기력증(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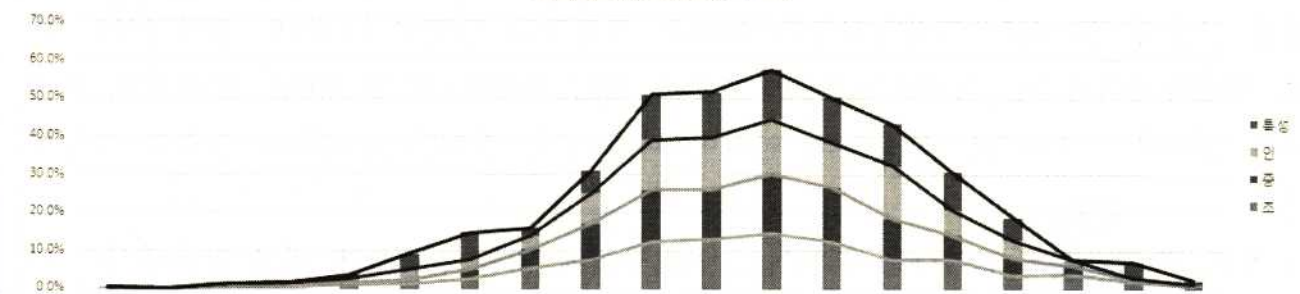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2.9	20.0	35.2	36.4	5.5
초등학교	2.7	18.4	30.6	40.2	8.1
중학교	2.1	21.1	37.5	35.4	4.0
인문계고	1.8	24.4	40.6	30.6	2.6
특성화고	10.7	16.0	42.0	29.0	2.3



교사들의 22.9%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교사 중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2% 안팎에 불과한 반면 특성화고에서는 이 비율이 10.7%에 달하여 타 학교 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II-116> 직무 피로도(교사)

교사의 직무 피로도 -->



8. 소결

1) 학생인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도는 높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하는 정도는 전국 교사들과 비교하여 조금 낮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는 학생인권보장에서의 중요한 주체이자 옹호자라는 점에서, 통계에서 보여지는 일부 교사들의 조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2) 학교생활에서의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관련한 설문결과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이외 학교군의 교사들의 답변률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 중학교와 특성화고 교사들의 답변에서 다소 낮은 수준의 권리보장을 읽을 수 있다. 다른 설문주체들의 답변 경향성과의 비교 및 중학교와 특성화고 교사들의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들에서도 중학교와 특성화고 교사들이 답변에서 폭력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과 대안이 필요하다.

4) 교사와 학교장의 의사소통에 관한 설문 결과 전반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의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인문계고와 특성화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점을 보이고 있다.

5)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교육행정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53.6), 과도한 행정업무(51.7), 교육예산의 부족(35.9), 수업시간 과다(29.3), 교장 및 상급자의 교육마인드 부족(21.6) 등이 주로 문제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한 심층조사와 그에 따른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

6)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65.8%에 달하는 교사가 구두로 주의를 준다고 답변하였고 직접적인 체벌로 대응하는 경우는 0.6%에 불과하였다. 한편 교권의 의미에 대한 설문에서도 이는 학생들로부터 부여된 권위라는 답변이 57.4%로 절반이상인 반면, 학생통제력이라는 답변은 6.6%에 그쳤다. 이는 학생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적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7) 한편,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인권사례에 대한 설문들에 대한 답변에서는 다른 답변과 경향성이 다른 답변을 선택한 교사들이 많아, 구체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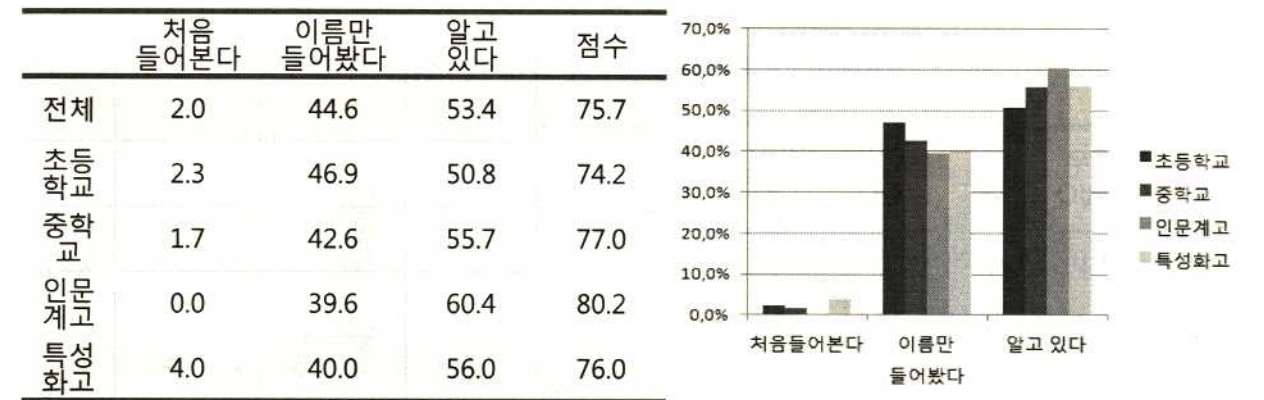
제5절 학교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1-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표 II-117>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학교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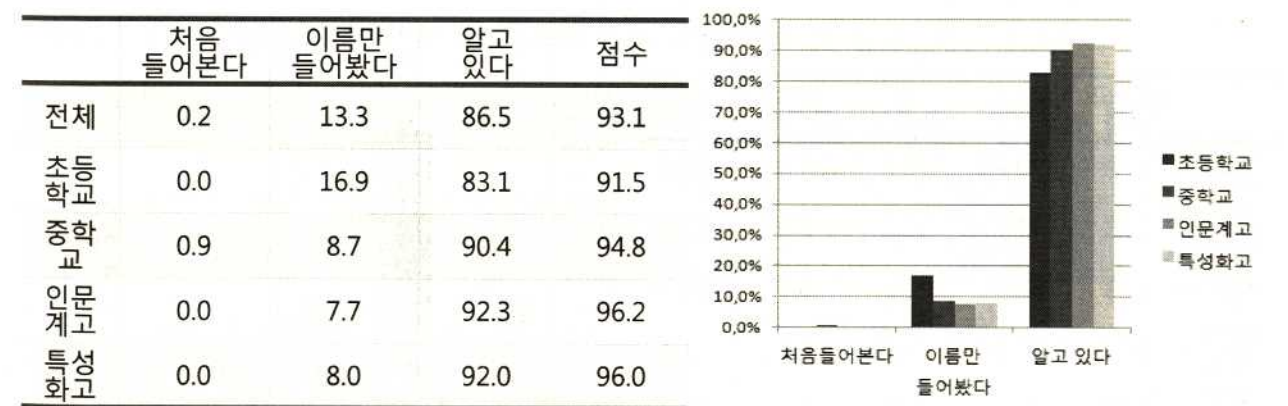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장 전체의 2.0%가 ‘처음 들어본다’, 44.6%가 ‘이름만 들어봤다’고 답변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학교장의 비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인식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고 특히 인문계고 학교장의 경우 ‘알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60.4%에 이른다.

1-2)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표 II-118> 학생인권조례 인지여부(학교장)

(단위 %)



학교장 전체의 86.5%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학생·교사·보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고등학교 학교장 중 '이름만 들어봤다'고 답변한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초등학교 학교장의 16.9%가 같은 답변을 해 타 학교 군에 비해 초등학교 학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II-119> 학생인권조례 영향평가(학교장)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점수
전체	6.0	72.2	13.2	1.1	7.5	61.0
초등학교	3.1	71.3	15.3	4.0	8.8	58.4
중학교	8.7	74.8	8.7	0.9	7.0	63.9
인문계고	13.2	66.0	15.1	0.0	5.7	64.3
특성화고	8.3	83.3	8.3	0.0	0.0	66.9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설문에서 전체 학교장의 78.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고등학교 학교장에 비해 초등학교와 인문계고 학교장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15.3%, 15.1%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4) 우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표 II-120> 헌법 및 교육기본법 내 인권보장조항 인지여부(학교장) (단위 %)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점수
전체	12.8	77.7	9.5	0.0	68.0
초등학교	12.3	76.6	11.1	0.0	67.3
중학교	11.3	80.9	7.8	0.0	68.1
인문계고	19.2	75.0	5.8	0.0	71.4
특성화고	12.0	80.0	8.0	0.0	68.2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내 학생인권관련조항 인식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장의 90% 정도가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답하여 높은 인식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

2-1) 선생님과 학교는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

<표 II-121> 성적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학교장)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전체	0.0	0.7	43.9	55.4	85.1
초등학교	0.0	0.4	39.2	60.4	86.8
중학교	0.0	1.7	47.8	50.4	83.1
인문계고	0.0	0.0	54.7	45.3	81.9
특성화고	0.0	0.0	52.0	48.0	82.8

학교가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거의 모든 학교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학생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설문에서는 부정적인 답변도 상당 비율로 나타나 답변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선생님과 학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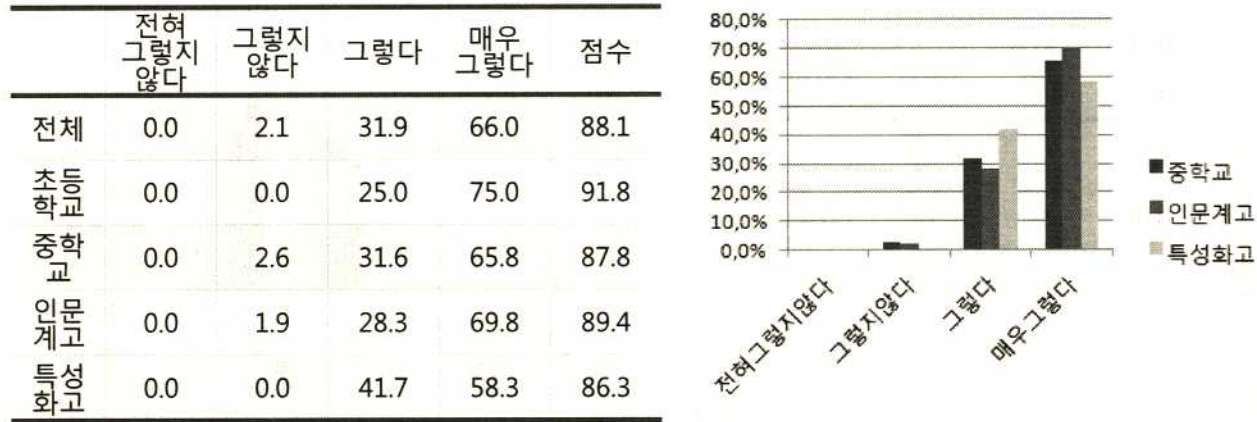
<표 II-122>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존재여부(학교장)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전체	0.0	0.2	37.3	62.5	87.5
초등학교	0.0	0.0	32.7	67.3	89.2
중학교	0.0	0.9	41.7	57.4	85.6
인문계고	0.0	0.0	50.9	49.1	83.2
특성화고	0.0	0.0	36.0	64.0	88.1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장들은 성적에 따른 차별여부 설문에서와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고 특히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생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설문에서는 부정적인 답변도 상당 비율로 나타나 답변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침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의 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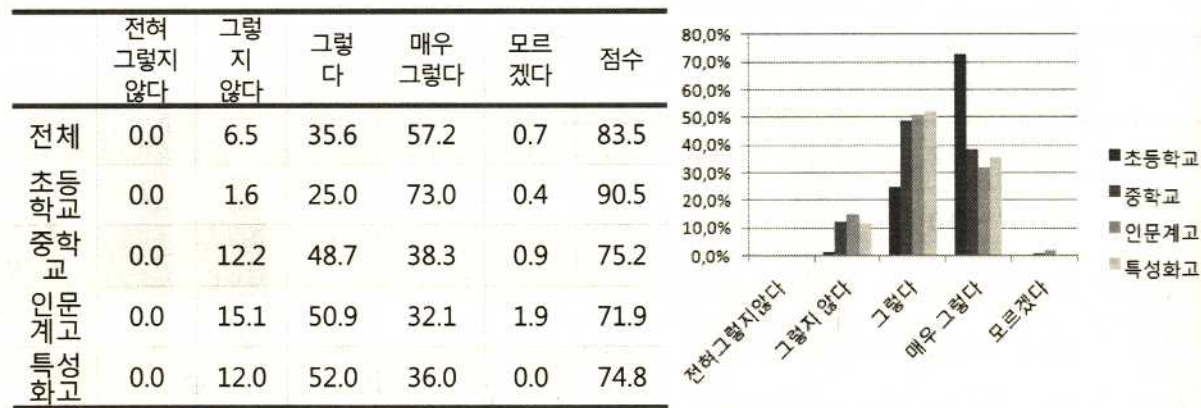
<표 II-123> 학습 선택권 보장여부(학교장) (단위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장의 96.9%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고, 특히 인문계고 학교장의 긍정적 답변비율이 다른 학교 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4) 우리 학교는 두발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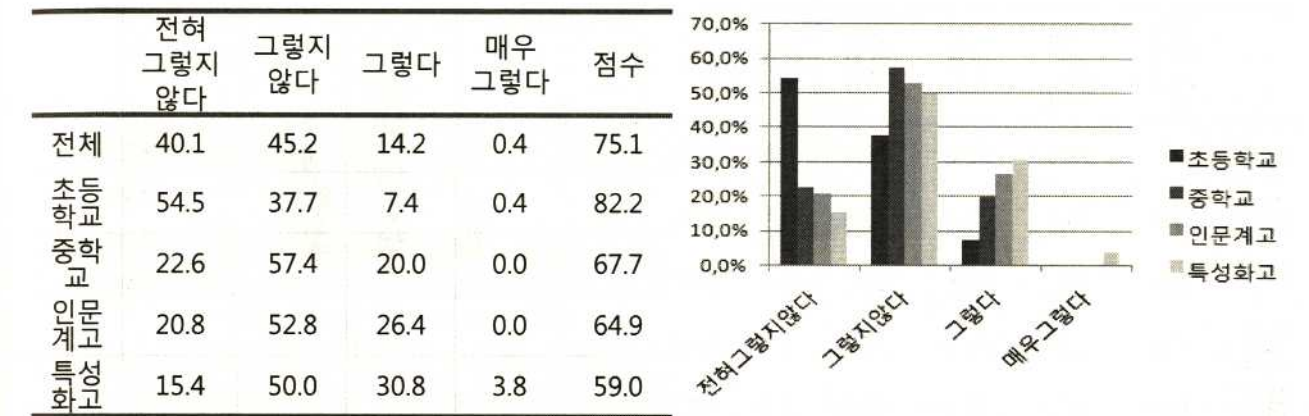
<표 II-124>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여부(학교장) (단위 %)



학교가 학생들의 개성실현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장의 92.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장의 각각 73%, 25%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변하여 타 학교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할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교복 착용 등의 제약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각서, 반성문 등의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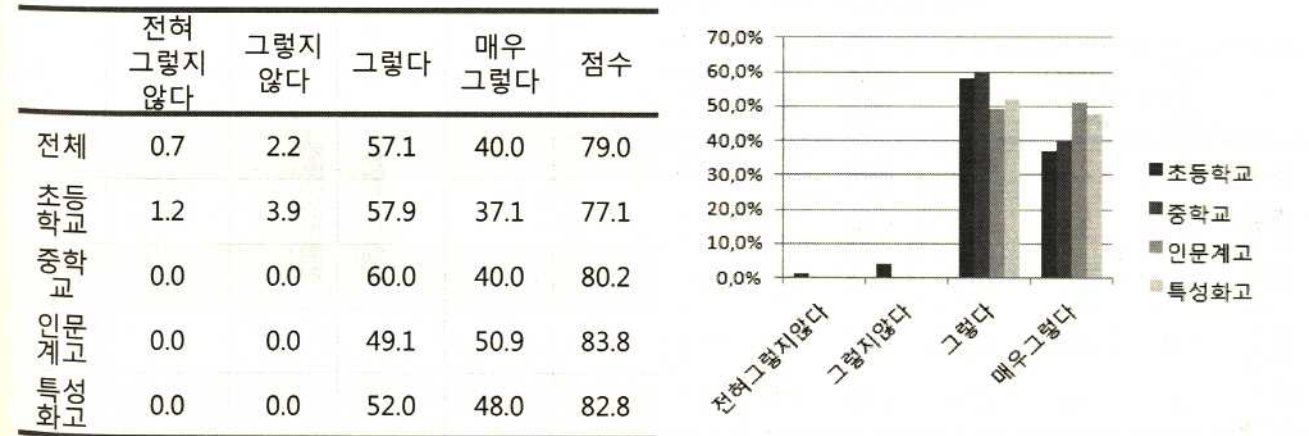
<표 II-125> 각서 및 반성문 작성강요여부(학교장) (단위 %)



학교가 학생들에게 각서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중학교>인문계고>특성화고의 순으로 강제성이 낮은 편인데, 초등학교·중학교 인문계고 교장의 '매우 그렇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1%에도 미치지 않는 반면 특성화고에서는 그 수치가 3.8%에 달하고 '그렇다'는 답변도 30.8%나 된다.

2-6) 우리 학교는 학급회의, 학생회(학생대표회) 등이 열린다.

<표 II-126> 정기 학급회의 및 학생회여부(학교장) (단위 %)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 운영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장 대다수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학교 군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비율이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은 학급회의나 학생회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2-7)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 및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학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표 II-127> 학생 의견 반영여부(학교장)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점수
전체	0.4	10.9	59.6	28.8	0.2	72.5
초등학교	0.8	15.4	62.5	20.8	0.4	68.0
중학교	0.0	6.1	51.8	42.1	0.0	78.8
인문계고	0.0	1.9	66.0	32.1	0.0	76.9
특성화고	0.0	4.0	52.0	44.0	0.0	80.2

학생과 관련한 주요 학교정책 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 학교장들은 중·고등학교 학교장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아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들이 학교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8)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28> 자율적 동아리 활동여부(학교장)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점수
전체	0.0	2.4	44.3	53.2	0.0	83.7
초등학교	0.0	3.5	46.9	49.6	0.0	82.2
중학교	0.0	1.7	43.5	54.8	0.0	84.5
인문계고	0.0	0.0	32.1	67.9	0.0	89.4
특성화고	0.0	0.0	48.0	52.0	0.0	84.2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인문계고 학교장의 긍정적인 답변비율이 가장 높게, 초등학교 학교장의 긍정적인 답변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3. 학교 폭력 등

3-1) 학생간 폭력(선배에 의한 단체 기합 포함)

<표 II-129> 학교폭력 피해 경험여부(학교장)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3회 이상	점수
전체	68.5	27.7	3.1	0.7	0.0	91.0
초등학교	83.2	16.0	0.4	0.4	0.0	95.5
중학교	50.9	39.5	8.8	0.9	0.0	85.1
인문계고	49.1	49.1	1.9	0.0	0.0	86.8
특성화고	40.0	48.0	8.0	4.0	0.0	81.0

학생 간 폭력에 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 학교장의 83.2%가 '없다'고 답변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 간 폭력을 목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와 유사한 답변 양상을 보이고 있다.

3-2) 교내 집단따돌림

<표 II-130>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여부(학교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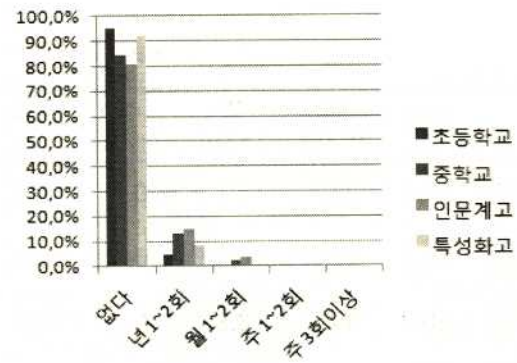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3회 이상	점수
전체	77.0	21.2	1.8	0.0	0.0	93.8
초등학교	82.9	16.0	1.2	0.0	0.0	95.4
중학교	66.7	29.8	3.5	0.0	0.0	90.8
인문계고	80.8	19.2	0.0	0.0	0.0	95.2
특성화고	56.0	40.0	4.0	0.0	0.0	88.0

학교장의 77%는 교내에 집단따돌림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초등학교와 인문계고에 서는 이러한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와 특성화고 학교 장의 29.8%, 40%가 각각 '년 1-2회'의 빈도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3) 교사 체벌

<표 II-131> 교사 체벌 경험여부(학교장) (단위 %)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3회 이상	점수
전체	90.4	8.2	1.3	0.0	0.0	97.3
초등학교	94.9	4.7	0.4	0.0	0.0	98.6
중학교	84.2	13.2	2.6	0.0	0.0	95.4
인문계고	81.1	15.1	3.8	0.0	0.0	94.3
특성화고	92.0	8.0	0.0	0.0	0.0	98.0



전체 학교장의 90.4%가 교사의 체벌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체벌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그 빈도는 '년 1-2회' 정도로 낮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학교와 인문계고에서 교사의 체벌 여부와 그 빈도가 높아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에 비해 학생들이 교사의 체벌을 더 자주 경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4. 교육환경

4-1) 교육활동의 어려움 요소

<표 II-132> 교육활동 장애요인(학교장) (단위 %)

	평균	과도 행정	현장 이해 부족	수업 준비 부족	소통 부족	수업 과다	예산 부족	부모 간섭	가정 지지 부족	수업 방해
평균	1.24	1.56	1.86	0.87	1.00	0.82	1.35	0.91	1.96	0.86
초등학교	1.24	1.64	1.79	1.12	0.74	0.98	1.25	1.28	1.79	0.59
중학교	1.26	1.75	1.94	0.56	0.89	0.69	1.52	0.77	2.27	0.95
인문계고	1.24	1.58	2.31	0.64	1.21	0.49	1.31	0.59	2.13	0.91
특성화고	1.23	1.30	1.41	1.15	1.15	1.12	1.31	0.99	1.63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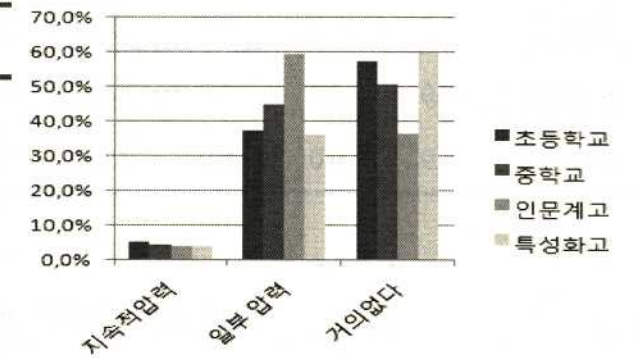
학교장 설문결과 교육청등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 업무가 교육활동의 중요한 장애 요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더 강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수업준비, 학생과의 관계, 수업의 부담 등은 크게 어려움을 만들지 않는다고 교장은 생각하고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일반적인 문제제기와 달리 학교장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방해는 다른 요인에 비해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4-2) 보호자의 성적관련 압력

<표 II-133> 보호자 성적관련 압력(학교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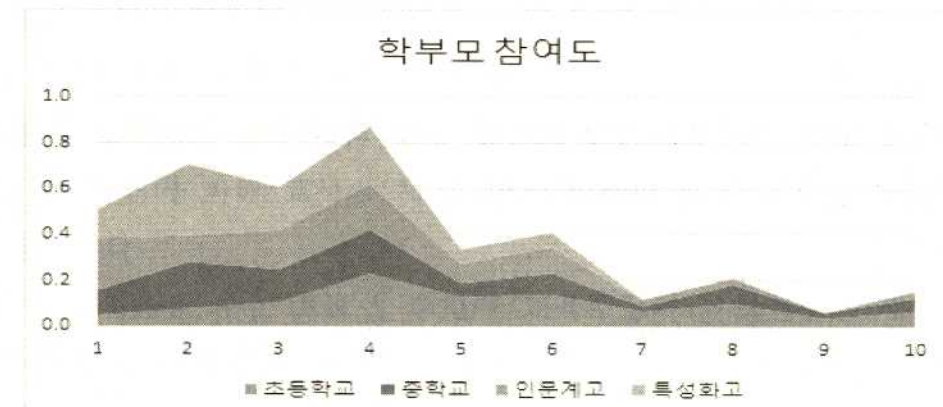
	지속적 압력	일부 압력	거의없다
전체	4.9	41.6	53.5
초등학교	5.4	37.2	57.5
중학교	4.4	44.7	50.9
인문계고	3.8	59.6	36.5
특성화고	4.0	36.0	60.0



학교장 설문 결과 보호자의 성적 압박은 거의 없거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에 한정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하나마 입시와의 관계성에 따라 초등학교 < 중학교 < 인문계고로 증가한다.

4-3) 보호자의 학교활동 참여도

<표 II-134> 보호자 학교활동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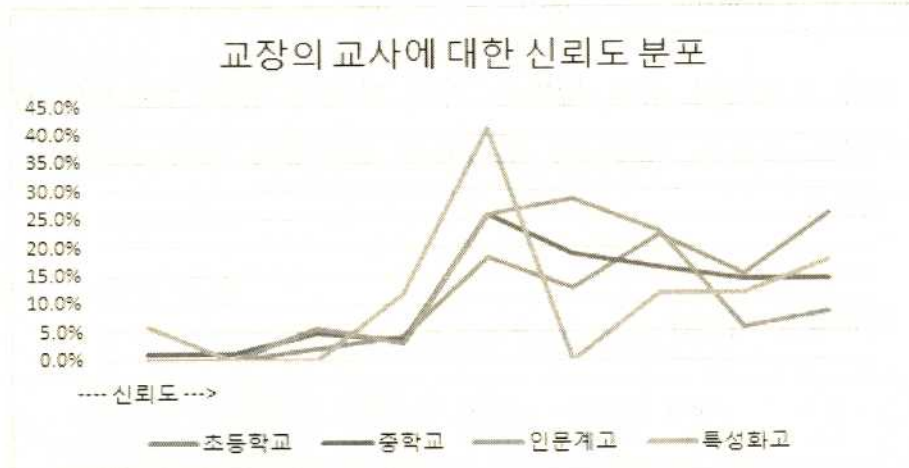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호자의 참여도가 낮아진다고 학교장은 답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참여도가 급하게 줄어든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보호자 대상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4-4) 교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

<표 II-135> 교사 신뢰 정도(학교장)

	33	42	50	58	67	75	83	92	100	평균
전체	0.6	0.3	2.9	4.3	22.0	15.1	20.3	13.7	20.9	80.6
초등학교	0.0	0.0	1.9	4.2	18.3	12.7	22.1	15.0	25.8	83.1
중학교	1.2	1.2	4.7	3.5	25.9	18.8	16.5	14.1	14.1	77.5
인문계고	0.0	0.0	5.7	2.9	25.7	28.6	22.9	5.7	8.6	76.0
특성화고	5.9	0.0	0.0	11.8	41.2	0.0	11.8	11.8	17.6	74.6

<표 II-136> 교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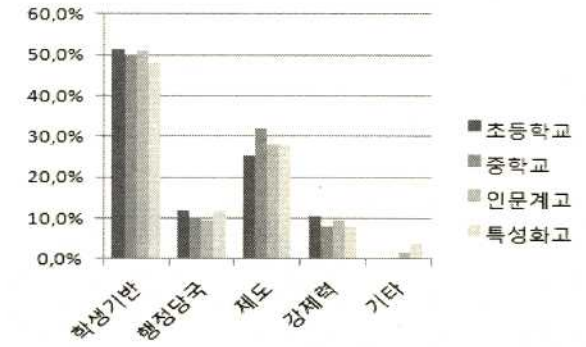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초등학교 > 중학교 > 인문계고 > 특성화고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5) 교권에 대한 인식 분포

<표 II-137> 교권 인식(학교장)

(단위 %)

교권	학생기반	행정단위	제도	강제력	기타
전체	50.9	11.2	27.6	9.6	0.7
초등학교	51.6	12.1	25.4	10.5	0.4
중학교	50.0	9.8	32.1	8.0	0.0
인문계고	50.9	9.4	28.3	9.4	1.9
특성화고	48.0	12.0	28.0	8.0	4.0



교권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장의 과반이 교권은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권위라고 답하였다. 한편, 특성화고의 교장들이 좀 더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5. 소결

- 1) 학교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조례의 인권보장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 2) 차별의 문제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과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 3)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설문에서 학생들의 학교 정책 결정에의 참여 및 각서 반성문 등의 강요여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교장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하여는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 간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의 문제가 다른 학교군보다 약간 두드러진 경향성이 보이는데, 학교규모 등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장 설문에 의하면 학생 간 폭력에 비해 교사의 체벌 등에 있어서는 특성화고가 낮은 빈도를 보이는 점도 특징적이다.
- 5)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교육행정의 학교현장 이해 부족과 과도한 행정, 예산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은 교사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가정의 지지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소로 보고 있는 점은 매우 다른 점이다.



제 3 장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